

안전한 보육, 행복한 동행

#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 목 차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1
1. 안전사고 현황	2
2. 연령별 안전사고 유형의 분포와 예방법	3
제2장 어린이집 실내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7
1. 실내 환경영역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8
실내환경(현관,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	9
심화 주제 1. 소방	15
심화 주제 2. CCTV 운영	22
심화 주제 3. 전기	26
심화 주제 4. 가스	34
2. 실외 환경영역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38
실외환경(옥외놀이터, 담장·울타리, 기타 등)	39
심화 주제 5. 석면	47
심화 주제 6.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50
쉬어가기(休) : 알아보고! 풀어보고! 가로세로 낱말퍼즐	59



##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61

1. 안전사고 대처법 ······ 62

2.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 64

**심화** 주제 7. 화상 ······ 69

**심화** 주제 8. 응급처치(기도가 막힌 경우, 심정지, 자동제세동기) ······ 75

부록 ①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점검 (소방, 전기, 가스) ······ 83

부록 ②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 84

부록 ③ 승강기(엘리베이터, 덤웨이터 포함) 안전 ······ 85

부록 ④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간물 ······ 86

부록 ④-1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 88

**참고문헌** ······ 90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제1장

##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 학습목표

- ▶ 보육에서 '안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
-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 연령별/발달수준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의 특성을 이해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공간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되, 그 속에서 **가정과 연계된 안전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치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을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 ① 안전사고 현황
- ②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



## 01

## 안전사고 현황

문2세

## 가. 연령별 보육현원 비율과 사고율 특성

2018년도 말 기준,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전체 인원은 1,415,742명이었으며, 이 중 남아 731,498명(51.7%), 여아 684,244명(48.3%)의 분포를 보임. 어린이집 재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2세(397,955명, 28.1%)였으며, 다음으로 1세(319,016명, 22.5%), 3세(233,274명, 16.5%) 순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 통계 기준】

- 분석 대상 : '18. 1월 ~ 12월까지 공제회로 접수된 건

※ 일반통계(보육통계)  
수치는 '18년도 12월 말  
기준임

※ 보육현원 전년대비  
34,501명 감소  
(△2.38%)

〈연령별 보육현원 비율〉

(단위 : 명. %)

구 분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
보육아동	1,415,742	126,793	319,016	397,955	233,274	169,328	163,314	6,062
비 율	100	9.0	22.5	28.1	16.5	12.0	11.5	0.4

2018년도 1월 ~ 12월까지 공제회로 보상청구(접수)된 총 20,649건의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연령별 사고 건수 및 사고비율〉

(단위 : 건. %)

구 분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
사고건수	20,649	98	2,572	5,176	4,791	3,465	2,834	1,713
비 율	100	0.5	12.5	25.1	23.2	16.8	13.7	8.3

연령별 보육현원 대비 사고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연령별 현원 비율 수 및 사고비율〉



먼저, 전체 보육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2세(397,955명, 28.1%)가 사고접수 건수(5,176건)에서도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재원 아동 수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절대 건수도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



연령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율 중 가장 높은 연령은?



## 나. 연령별 인원 대비 사고율의 상관관계 및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

### 〈연령별 사고율〉

\* 산식: 연령별 사고건수 ÷ 연령별 보육아동수



전체 보육현원에서 각 연령대별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대비 사고율과의 관계는 왼쪽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연령이 높아 질수록 사고율이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음

다만, 0~1세 영아의 경우 사고율은 낮으나, 신체적 발달이 미약하고 방어능력이 없어서 사고(예: 화상, 질식) 발생 시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연령별 사고 유형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예방이 중요함

11



## 02

### 연령(발달수준)별 안전사고 유형의 분포와 예방법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고별 빈도 및 사고원인 등에 따라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령별 사고유형 분포를 파악하고자 함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기타)
세부 사고유형	넘어짐/ 떨어짐/ 미끄러짐	물체에 부딪힘/ 사람에 부딪힘	꼬집음/물림/ 핥음/당김	화상	이물질 삼킴 (삽입) 및 흡입/ 음식물 섭취	끼임/눌림/ 찔림/베임/ 기타
비율	7,318건 (35.4%)	6,596건 (31.9%)	2,172건 (10.5%)	432건 (2.1%)	543건 (2.6%)	3,588건 (17.4%)
만 0~1세	947건	751건	447건	116건	35건	374건
만 2세	1,865건	1,447건	880건	94건	100건	790건
만 3세	1,721건	1,558건	481건	99건	155건	777건
만 4세	1,217건	1,199건	198건	50건	128건	673건
만 5세 이상	1,568건	1,641건	166건	73건	125건	974건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군은?



## 〈 0~1세 사고비율 대비 유형별 사고율 〉



\* 0~1세 영아의 사고비율은 12.9%(2,670건/20,649건)임.

(참고: 현원 비율은 31.5%)

\* — 평균사고율 이상 유형군

## ■ 사고유형별 특징

- ① 화상 사고(4군) 발생률\*이 특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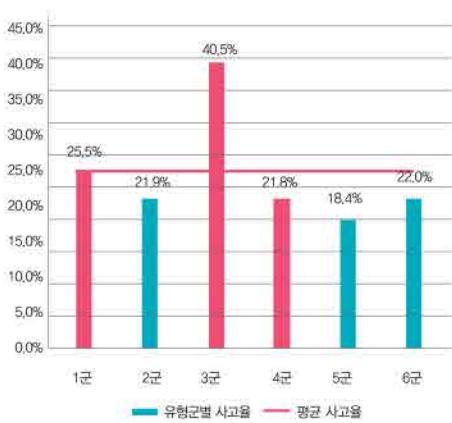
\* 전체 432건 중 0~1세 116건(26.9%) 발생

- ②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한 시기로 또래간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아 꼬집음/물림/할퀴/당김(3군) 사고 발생률\*도 높게 나타남

\* 전체 2,172건 중 0~1세 447건(20.6%) 발생

- ③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1군) 및 물체나 사람에 부딪힘(2군) 사고 발생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임

## 〈 2세 사고비율 대비 유형별 사고율 〉



\* 2세 영아의 사고비율은 25.1%(5,176건/20,649건)임.

(참고: 현원 비율은 28.1%)

\* — 평균사고율 이상 유형군

## ■ 사고유형별 특징

- ① 감정조절능력이 미숙하여 꼬집음/물림/할퀴/당김(3군)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2,172건 중 2세 880건(40.5%) 발생

- ② 화상 사고(4군) 발생률 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432건 중 2세 94건(21.8%) 발생

- ③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1군) 사고가 물체나 사람에 부딪힘(2군)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남



만 2세 사고비율 대비 유형별 사고율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군은?



### 〈 3세 이상 사고비율 대비 유형별 사고율 〉



#### ▣ 사고유형별 특징

- ① 이물질 삼킴(삽입) 및 흡입, 음식물 섭취(5군) 사고 비중(위험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543건 중 3세 이상 408건(75.1%) 발생

- ② 신체활동성이 높아지고 활동영역 및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끼임/눌림/찔림/베임 및 기타 사고(6군)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전체 3,588건 중 3세 이상 2,424건(67.6%) 발생

- ③ 대근육의 발달 등 신체움직임이 활발해짐과 함께 충돌 사고(2군)가 높게 나타남

\* 전체 6,596건 중 3세 이상 4,398건(66.7%) 발생

## 나.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과 예방법

- 유형 1군(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 35.4%) :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
  - 특히, 행동범위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주변 대상들에 대한 모방 행동이나 즉흥적 놀이를 많이하게 되는 만 2세 이하 영아들에게 주로 발생함
  -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예측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 할 수 있도록 보육실 환경 점검·배치와 안전한 놀이행동 및 상황 관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유형 2군(물체/사람에 부딪힘, 31.9%) :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
  - 대근육의 발달로 신체움직임은 활발해지는 반면, 자기중심적인 상황판단이나 좁은 시야가 지속되는 만 3세 이상 유아들에게 충돌사고(부딪힘)가 자주 발생함
  - 안전한 보육환경의 예방적 구성 및 보육교사에 의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함. 영유아는 상호작용 중에 다치는 일이 잦으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위험한 행동이나 움직임을 주시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개입 필요. 또한, 생활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함



3세 이상 사고비율 대비 유형별 사고율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군은?



## • 유형 3군, 4군 : 특히 영아기 발달특징과 연관

- 유형 3군(꼬집음/할퀴/물림/당김, 10.5%) : 감정조절 능력이 미숙한 상황에서 놀이 중 상대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로 표출됨.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만 2세 이하에서 많이 나타남
- 유형 4군(화상, 2.1%) : 호기심이 왕성하고 예측 불가한 행동들이 빈번한 만 0~1세에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대부분 보육교직원의 부주의(뜨거운 음료, 글루тен 등)가 관련된 사고임.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과 철저한 주의와 함께 세부 사고유형별 예방조치가 필요함

## • 유형 5군(이물질삼킴(삽입) 및 흡입/음식물섭취, 2.6%) : 영아기의 구강기적 특징과 연관 지어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안전사고 접수 사례들은 주로 유아들에 의한 교구 삼킴(예, 역할놀이 관련 음식재료 교구재 등)이나 동전/건전지 등의 삼킴/삽입, 음식물 섭취로 인한 사례가 발생함

## • 유형 6군(기타, 17.4%) : 끼임, 찔림, 베임, 기타 야외사고(물에 빠짐 등)나 교통사고 등으로 전 연령기에 걸쳐 나타남. 활동 영역 및 반경이 확대되는 영유아기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또한 영유아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과 상황 판단 능력이 아직 부족하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예측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거나, 영유아와 함께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 •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조치만이 아니라 가정과의 협력(옷차림 및 생활습관(예절), 손톱정리, 신체적·정서적 정보 공유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안심보육환경의 구성은 보호자와의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요소임을 함께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과의 협력이 중요



## 제2장

# 어린이집 실내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 학습목표

- ▶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영역별/활동별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법을 이해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잠재적 위험 발견 시 제거 및 수리 등 정기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실내외 환경의 안전수칙을 익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 **사전 예방** 및 **대피훈련** 등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물 교체와 전기 및 가스 관련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익히기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처 요령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실내외 환경영역별 사고사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 제2장 어린이집 실내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 ① 실내 환경영역별 사고유형과 안전사고 예방법
- ② 실외 환경영역별 사고유형과 안전사고 예방법



01

## 실내 환경영역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 1 현관, 출입구
  - 2 복도, 계단
  - 3 보육실
  - 4 공동놀이실
  - 5 화장실
  - 6 조리실, 식당



## 1. 현관 / 출입구 사례 ① : 신발장 경첩은 만지지 않아요

NEW ★★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가) 영유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안전하게 관리

-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도록 개폐관리
  - 현관 출입통제 장치(인터폰 등) 설치
  - 손끼임 방지 및 속도조절장치 등 안전설비 구비
  - 현관 내부 : 눈 / 비 오는 날 물기 제거(우산꽂이, 매트 등)

## ▶ 주의

- ◆ 현관 유리문 스텐 몰딩 노후화로 인해 베이거나 넘어짐(찢김) 사고 발생  
→ 점검 후 교체(소재 등)
- ◆ 문 사이 경첩에 끼여 손가락 절단 등 사고 발생  
→ 손끼임 방지 및 속도조절장치 등 구비



&lt;노후된 현관문&gt;

- 현관문 등 어린이집 내 모든 문에 적용

## • 신발장

-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고정
- 신발장 위 위험한 물품 치우기 및 신발장 문 손끼임 방지 처리
- 성인용 신발장과 구분 수납

※ 현관에 안내판 설치 시 단단하게 고정

## 나) 진입(경사)로

- 계단, 입구에 미끄럼방지 설비(매트 등)



어린이집 진입로 계단, 입구에 미끄럼 방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설비는?



## 1. 현관 / 출입구 사례 ② : 신발을 꼭 맞게 신어요



## 가) 영유아 옷 및 신발 등에 대한 가정과의 연계 및 안전 관리

- (옷) 구슬 등의 장식(떨어진 것을 삼키거나 코, 귀에 넣을 수 있음)이 복잡한 옷은 피하도록 안내
- (신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신발, 끈이 있어서 밟혀 넘어지거나 신고 벗기기에 불편한 신발은 피하도록 함  
※ 가정(보호자)과의 연계 ·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안전 생활습관 형성

## 나) 귀가 시 현관에서의 질서 유지

- 귀가 시, 현관 앞이 혼잡할 수 있으니 영유아들이 차례대로 나와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정(보호자)과의 연계 : 보호자 이외에 타인이 귀가를 담당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 확인



영유아의 통일된 안전한 생활습관을 위해 ○○과 연계 중요

## 2. 복도 / 계단 사례 ① : 복도 손잡이를 올바르게 잡아요



### 가) 복도

- 최소한 성인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너비 확보 (영유아 충돌 방지)
-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기구(안전창), 창문보호대 설치(120cm 이하 창문, 2층 이상)

※ 필요 시 창틀에 모서리안전장치 설치

### 나) 계단

- 계단 바닥재는 미끄럼지 않은 재질 사용
- 계단의 끝부분에 미끄럼방지대 설치
- 계단 중간의 꺾임공간(참) 관리
  - 유리재질, 철제 등 배치 지양
-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 높이 120cm 이상
  -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
-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 사이 공간을 막음



<미끄럼방지 설치>

- 관련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안전난간 등)



2층 이상 영유아 교육공간에 120cm 이하의 창문이 있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는?



**복도 내 분전반 관리**

- 분전반 내·외부 불필요한 물건이 적재 또는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치움  
**※ 벽지, 적재물 등으로 분전반을 가리지 않음**
- 분전반 내부에는 차단기, 전선이 충전부와 연결되어 있어 감전 우려가 있으니 영유아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전면에 전기위험 표시판을 부착
- 영유아의 머리 높이에 분전반 손잡이가 위치하고 있어 돌출될 경우 사고 우려가 있으니 임의 조작에 의해 돌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 설치



&lt;분전반 관리 우수 사례&gt;

**인테리어(합판 등) 방염**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한 제품 사용  
(공장 생산 시에 방염처리 후 판매)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일부 합판 및 목재는 현장에서 방염처리 가능(후처리)  
**※ 실내 간이 칸막이 공사, 흡음재 (방음재) 설치 및 인테리어 변경 시 등 관할소방서에 사전 문의**



&lt;커튼, 블라인드 등 방염제품 사용 및 방염라벨 확인&gt;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

**피난구 유도등 / 피난안내도 관리**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 실의 출입구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 **유도등은 상시 전원이 연결되어 항상 점등 및 충전**  
(단, 3선식 배선으로 화재 감지기 등과 연동으로 점등 시 예외)
- 꺾임 공간 등으로 복도(거실)에서 비상출입구가 보이지 않을 시 거실통로유도등(천장에 설치) 추가 설치



&lt;피난구 유도등&gt;

- 관련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기준(NFSC 303),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은 상시 전원이 연결되어 항상 점등 및 충전



- 피난안내도를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각 보육실과 출입구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표시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표시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표시

※ 피난안내도는 보육실뿐 아니라 눈에 잘 띠는 곳(현관, 복도 등)에도 비치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http://www.nfa.go.kr)) > 소방소식 > 공지사항 >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참고

- 소방대피 훈련 시 주의사항 – 어린이집 외부 안전한 공간(어린이집 앞 제외)으로 대피



### 화재 발생 시

#### 1) 주변에 알리기

- 화재를 감지하고 ‘불이야!’ 하고 외침

#### 2) 119에 신고

- 119 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어린이집 이름, 보육실 이름, 도로나 거리 이름 등)
  - 응급상황의 내용(목의식, 무호흡, 안전사고 등)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명수와 상태
  - 영유아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등)
  - 필요한 도움 등

#### 3) 초기진화 또는 대피

-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가능한 경우: 신속히 진압



다음을 순서에 맞게 나열해보세요

(1) 119에 신고, (2) 초기진화 또는 대피, (3) 주변에 알리기

- 관련자료. 20년 보육 사업안내(부록)
  - 어린이집 비상대피 훈련 표준 안내





출처 : 소방청 블로그(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법 알아보기)

-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어려울 경우 : 신속히 대피
  - 비상문에서 제일 가까운 보육교직원이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대피
  - 교사는 영유아가 평상시에 훈련한 대피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
  - 교사는 남아 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살핍
  -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구를 이용

### 〈쉽고 빠른 119 신고서비스!!〉



- 신고자가 최소한의 동작으로 119 신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으로 신고 메시지는 MMS 또는 SMS를 통해 해당 지역 소방 상황실로 전송
- 긴급대피요령 및 응급처치요령 제공
- 최소한의 조작으로 빠른 신고 가능

[애플리케이션 활용] 소방청 119 신고서비스



(O,X 문제) 화재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한다.





## 【심화】

## 주제 1. 소방



## ① 소화설비



## 1) 소화기

- 소화 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화기 표지판 설치
- 투명 소화기케이스 등에 보관하여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관리 권장
- 압력계이지 및 사용연한(10년) 확인
- 보육실의 경우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실마다 1개씩 비치하는 것을 권장

## 2) 스프링클러 설비

-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한 후 소화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
- 화재 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헤드)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적재물 금지
- 점검 및 관리
  - 설치된 배관 및 헤드에 변형, 손상, 탈락, 부식, 누설 확인
  - 헤드 주위에 살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수원의 저수량은 확보되었는지 확인
  - 가압 송수장치(펌프)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동결우려가 있는 곳에 보온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유수검지장치 및 테스트 밸브의 압력은 적정한지 확인

## ② 경보설비



## 1)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알리는 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어린이집 건물(1~3층) 구획된 각 실과 최상층 계단 천장에 설치(단,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면제)
  - 각 실 및 바닥 면적당 개수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시험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여 배터리(건전지)의 정상상태 확인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관련법령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5조(단독경보형 감지기)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심화】



최상층 계단 천장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우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양호

## 2) 비상경보설비

- 화재발생 시 발신기의 스위치를 눌러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

## 3)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 연기 · 불꽃을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벨,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

## ③ 피난설비



## 1) 비상출구(비상대피로)

- 피난안내도 위치(양방향대피, 소화기 위치,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 등 명시)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 강화 통유리인 경우 비상구 규격에 맞아야 하며, 옆에 비상 망치를 구비
- 비상출구 개방에 방해되는 커튼, 거울, 교구장, 짐 등을 놓아서 비상출구를 막지 않도록 함
-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 내부에서 파괴가 가능하거나 열 수 있는 구조

• 피난안내도 관련 :  
본교재 13페이지

## 2) 비상계단

-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 되는 계단





## 【심화】



### 3) 피난기구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
- 어린이집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종류

구 분	정의
미끄럼대	화재 또는 비상 시 안전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치
구조대	(하강식 경사구조대) 모자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오며 대피할 수 있는 것
승강식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MEMO



## 3. 보육실

## 사례 ① : 광 문에 끼인 손가락

끼임방지대



## 가) 문

- 여닫이문보다 미닫이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한 방향으로 열고 닫도록 설치
- 문틀 사이, 문틈 아래에 공간이 있는 경우 끼임방지대를 설치
- 영유아 신체에 손잡이가 닿을 경우 둥글게 처리된 손잡이를 사용하거나 손잡이 쿠션(커버)를 써워서 사용
- 영유아가 보육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지 않도록 잠그는 기능 제거
- 가급적 안과 밖이 다 보일 수 있는 투명 강화유리를 설치하고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부딪침 방지

## 나) 창문

- 추락방지기구, 모서리보호대 등 설치(바닥부터 120cm 이하)
- 커튼, 블라인드 선 정리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의 경우 방염제품 사용
- 2층 이상의 경우 창문에는 안전장치(안전창살, 이중창 또는 난간)를 설치
- 강화유리가 아닐 경우, 파손대비 투명시트지 부착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

## 다) 벽면/ 바닥

- 필요 시 게시판 모서리에 안전장치 부착 / 게시판 부착 시 고정
-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고무매트나 카펫두기(소음 및 충격방지)
- 문턱을 낮추거나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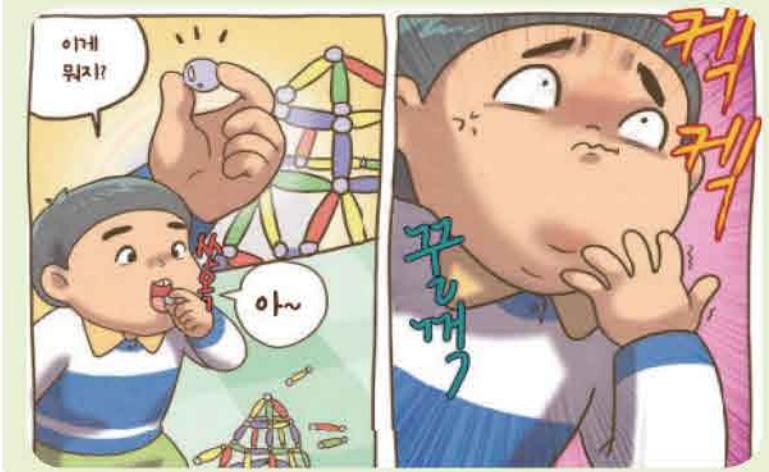
문틀 사이나 아래에 공간이 있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는?



## 3. 보육실

## 사례 ② : 자석을 끌꺽 삼켰어요

NEW ★★



약 3.5cm 이하 놀잇감

## 가) 놀잇감

- 영아(만0~1세 이하)에게 제공되는 놀잇감은 직경이 약 3.5cm 초과하여야 함
  - 자석부품이 포함된 교구는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파손 또는 노후화 발견 시 파기 필요
  - 영유아가 놀잇감의 사용법을 알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놀이 후에는 놀잇감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약속
  - 바닥에 작은 놀잇감 등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
  - 영유아에게 충분한 수의 교구를 마련해주고, 영유아의 선호도가 높은 교구는  
동일한 것으로 여러 개 구비
- ※ 놀잇감으로 인한 또래와의 갈등 상황 유발 방지
-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찔릴 만한 작은 놀잇감들이 있는지를 교사가 수시로 점검하여 치우도록 함



영아(만0~1세 이하)에게 제공되면 안 되는 놀잇감의 크기는?



## 3. 보육실

사례 ③ : 덜컹, 역할놀이 싱크대가 흔들렸어요.



## 가) 교구장, 가구장, 피아노 등

- 보육실 내의 가구(교구장, 역할놀이 대형교구 등)들은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구장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필요
- 가구장(이불장, 교사 소품장 등)이 보육실 내에 있을 경우 잠금장치 설치
- 피아노 밑부분, 건반과 뚜껑 사이에 폭신한 천이나 부직포를 부착하고, 피아노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뚜껑을 닫아 놓고 잠금장치 부착

## 나)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첫솔살균기, 선풍기, 가습기 등)

- 가전제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선풍기나 히터는 보호망을 사용하거나 손이 닿지 않는 벽걸이 용으로 사용
- 가습기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 가전제품 전선이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정리
- 가전제품에 문어발식 배선(콘센트에 집중연결)을 사용할 경우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금지하고, 전력 소요가 많은(전열기) 가전제품은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함
- 가전제품 전선은 영유아 이동 시 걸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정리
- 전기배선 중 비닐코드 배선은 과열·감전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사용을 금하고 케이블 전선을 사용
- 멀티탭은 각 콘센트에 개별스위치 부착용과 과부하 시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
- 멀티탭에 누적된 분진이나 습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주변의 인화성 물질제거 및 주기적 분진제거 등 점검 필요



○○○은 각 콘센트에 개별스위치 부착용과 과부하 시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

## 3. 보육실

## 사례 ④ : 손가락이 끼었어요

NEW ★★



잠금장치

## 가) 교사 물건

- 보육교직원의 개인 물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영유아에게 위험 요소가 있는 물건(글루건, 전기주전자, 뜨거운 커피나 차 등)은 보육실에서 사용 금지

## 나) 기타 비품(약품 등)

- 약품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다) 교사실 등

- 교사실, 원장실 등에는 영유아 출입 제한을 위한 게이트 또는 잠금장치 설치(성인 키 높이)



교사실, 원장실 등에는 영유아 출입 제한을 위한 ○○○○ 설치





## 【심화】

## 주제 2. CCTV 운영



##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됨

-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리/인권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범죄예방 등

- 관련자료. 20년 보육 사업안내(부록)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❶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 1) 설치 의무

- 모든 어린이집이 설치 의무 대상임
  - 단, ①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설치 / 미운영) 신고한 경우 또는 ②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예외

\* ①, ②: 1년간 유효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2) 성능 기준 및 설치구역

- 해상도 :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고해상도 HD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 저장)
  - ▶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여 화질 저하 ×
- 저장 :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저장 시 초당 10프레임 이상)
  - ▶ 3개월 초과 저장 × (법 제15조의5 제3의 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 삭제 관리)
- 카메라 : 보육실 등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려놓거나, 카메라 렌즈 앞 장애물(커튼 등) 설치 ×
- 임의조작(예, Zoom-in 등) 및 녹음 기능 불가
- 설치구역 :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식당/강당 (단, 별도로 구획된 경우에 한함)
- 안내판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출입구, 담장 등)에 반드시 설치
  - 촬영(녹화)시간 : 어린이집 운영시간(원칙), 필요에 따라 야간/휴일 등도 가능
    - ▶ 안내판과 내부관리계획상 촬영시간 일치 확인, 외부 설치 시 원 연락처 기재

- 보육사업안내 부록5. 별지 제12호 서식





## [심화]



### 3)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설정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 및 관리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 ▶ 학부모 상담실(원장실), 교사실, 현관/출입구 등 오픈 공간에서의 영상정보 노출 통제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영상정보에 대해 다음의 조치
  -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1호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1항 제2호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1항 제4호

### ② 열람 및 제공 시 유의사항



#### 1) 열람의 요청

-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 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서면을 통해 열람 요청 가능
  - 단, ①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 ② 관계 공무원 등(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포함)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
  - 열람 결정은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열람 장소와 일시 등)
  - 열람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

- 보육사업안내 부록5. 별지 제7호 서식





## 【심화】



## 2) 열람

- 어린이집의 원장은 열람 조치 시,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 하게 할 경우 보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
  -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의 내용을 제3자(타 정보주체인 학부모 등 포함)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열람의 거부

- 어린이집의 원장은 거부사유에 해당될 경우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거부 사유
  - 아동의 안전 확인 등 열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60일)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2항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8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8조, 제71조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3항

## 4. 공동놀이실

## 사례 ① :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어요



## 가) 공동놀이실 구성

- 대근육 활동 기구는 충분한 주변 공간을 둠
-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
- 영유아 키 높이의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안전 매트 설치. 대근육 활동 시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매트 설치
- 창문이 없는 벽면에 놀이기구 배치하기



&lt;미끄럼틀 안전매트&gt;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나) 실내 놀이기구

- 놀이기구는 영유아의 신장, 체중을 고려하기
- 놀이기구에는 살이 베이거나 찔릴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모서리 등), 돌출 부분(볼트, 너트 등),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함
- 1m 이상 높이의 모든 놀이기구에는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충격 흡수용 표면재)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
-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바닥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며 충격을 최소화
- 움직임으로 인하여 옷과 끈 등이 놀이기구에 묶이거나 얹매임이 없어야 함



공동놀이실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으로 나누어 활동





## 【심화】

## 주제 3. 전기



심화사례

사례 ① : 어린이집에 불이 났어요

NEW ★★



## ① 전기 설비 관리



## 1) 콘센트

- 접지극(금속부분) 유무 확인 /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하고 접지선이 접지극과 연결되도록 시공
- 물기있는 장소(화장실, 조리실 등)는 방적형(덮개 부착형) 덮개 사용과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15mA, 0.03초 동작)가 부착된 콘센트를 사용



&lt;접지극&gt;



&lt;방적형 콘센트&gt;



&lt;누전차단기 콘센트&gt;

## 2) 연결 배선 정리

- 연결 배선이 늘어지지 않게 하고 과다한 사용(멀티탭) 금지





## 【심화】



### 3) 냉·난방기구

- 선풍기 덮개를 씌워 보관 시 꼭 전원을 분리하여 정리(선풍기 덮개를 씌워 놓고 전원을 켜 선풍기가 덮개 씌운 상태로 돌아갈 경우 화재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여 정리)
- 전열기구와 인화성 물질(커튼, 블라인드 등)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용

### 4) 분전반

- 분전반 관련 : 본교재 12페이지

## ② 정기 점검 및 일반 관리



### 1) 정기적 월 1회 이상 검사

-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점검 방법
  - 배선용 차단기를 모두 내려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를 차단
  - 누전차단기의 우측 또는 하단에 있는 시험용 단추(TEST 버튼)를 누름
  - 이때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누전차단기를 교체
- 전기배선(전선) 및 콘센트 외관 확인
  - 먼지가 쌓인 경우 진공 청소기 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줌
  - 전기 전선이 노후 되었거나 손상(끊김, 심한 구부림, 가구 등에 눌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 전선으로 교체
  - 전기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있을 경우 새 전선으로 교체
- 노후 전기기구 교체
  - 전기기구에 발열·외형변형·소음·냄새 발생 시 전문가에게 점검 후 조치

### 2) 일반적 관리

- 인증 제품 사용
  - 전기용품 사용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 받은 KS 또는 KC 제품을 사용
- 전선 정리
  - 영유아 손에 닿는 부분에 노출된 전선이 없도록 배관 또는 몰딩을 이용하여 정리
  - 바닥이나 문 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  
(전선 눌림으로 누전, 화재발생 우려)





## 【심화】



## • 콘센트

-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확인 : 발열 또는 검게 그을림 확인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도록 함
- 전기용품과 벽면 콘센트간의 거리 유지 : 전기용품과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이격거리가 좁을 경우 발열·과열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 거리 유지
- 영유아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콘센트 안전커버를 활용
- 콘센트 편에 젓가락 등 쇠붙이, 장난감을 넣지 않도록 주의
- 파손된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고 신제품으로 교체 사용
-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물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함



&lt;안전덮개&gt;



&lt;파손된 콘센트&gt;



MEMO

## 5. 화장실

## 사례 ① 화장실 앞에서 미끄당



화장실

## 가) 화장실

- 세면대는 단단하게 고정하기
-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미끄럼방지 또는 물기제거판 설치
- 영유아용 화장실 문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문에 손끼임방지장치 설치)
-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실의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맞게 설치하며, 위험요소(날카로운 부분 등)가 없는지 확인
-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인 눈높이에 잠금장치 설치
- 스테인리스, 타일 등으로 제작된 각진 모서리는 모서리보호대 등 설치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 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주의

## ◆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 변기청소용 솔, 변기 압축기, 대걸레 등
-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lt;비품 보관함&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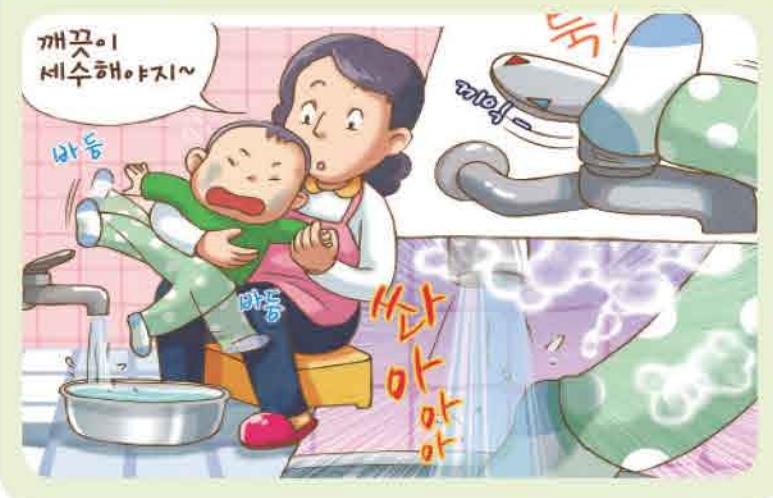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층간 설치 지양)되어야 하는 시설은?



## 5. 화장실

사례 ② 갑자기 나온 온수에 화상을 입었어요



## 가) 화상 관련(목욕실, 세면대, 라디에이터 등)

- 목욕실의 샤워설비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며, 샤워기 줄은 짧게 정리하거나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
- 화상방지를 위해 영유아가 사용하는 세면대의 물이 고온으로 나오지 않도록 온수 조절장치 혹은 중간밸브를 통해 수온 조절
- 돌출형 발열기(라디에이터)나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장치(울타리 등)를 설치



&lt;온수조절장치&gt;



&lt;샤워기 안전 보관함&gt;



영유아가 사용하는 세면대의 물이 고온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는?



## 6. 조리실 / 식당 사례 ① : 뜨거운 국이 엎질러졌어요



A급 소화기

### 가) 조리실 안전문 설치 / 공간 구성

- 조리실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가 어려운 경우 안전장치 설치
- 주방에서 보육실로 음식 이동 시, 가능한 전용 카트 또는 텀웨이터에 싣고 한번에 나르도록 권장
- 뜨거운 물과 음식은 화상 방지를 위해 미리 식혀서 제공
- 조리실의 벽, 바닥, 천장은 모두 내화성, 내수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설비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청정한 실내 환경 유지
- 조리실 내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설치

### • 본 책 부록3. 참조

\*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 시 화염이나 열 감지 ( $72^{\circ}\text{C}$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  $45^{\circ}$  각도로 비산



&lt;자동확산소화기&gt;



&lt;주방용 K급 소화기&gt;

• 관련법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4]부속용도 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 제3호 관련)」

• 2017년 이전에 인가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비치 권장



주방을 의미하는 'Kitchen'에서 앞글자를 따 지어진 것으로 주방화재, 특히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는?



## 6. 조리실 / 식당 사례 ② : 짹둑 짹둑 가위



## 가) 영유아 급·간식 배식

- 급·간식 배식 시에 영유아들은 정해진 곳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
  - 음식을 자르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잦으므로 식품 절단은 조리과정의 일부로 주방에서 미리 준비(크기가 큰 음식은 작게 잘라 제공)
- ※ 사탕, 포도, 견과류, 떡 등은 먹다가 기도에 걸리는 일이 많은 음식임

## ☞ 추가 사고사례 - 기도에 떡 걸려 사망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만 3세 유아가 원에서 제공된 꿀떡을 먹음(크기는 약 3cm, 자르지 않음). 입에 넣은 떡이 유아의 기도에 걸려 원장이 하임리히법을 하였으나 떡이 빠지지 않았고,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자르거나 써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장소는?



## 6. 조리실 / 식당 사례 ③ : 음식물 알레르기



알레르기

### 가) 영유아 식품 알레르기

- 입소 시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등을 입소신청서, 식생활 요구 조사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 및 확인

\* 개별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 간호사 포함)에게 알려 사고 예방

### ◆ 추가 사고사례 – 식품 알레르기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만 3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오후 간식으로 나온 현미떡을 섭취 후 구토 및 두드러기 증상 발생 / 담임교사는 유아가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현미떡에 호두가 들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식으로 제공함

#### • 어린이집에서 알아두어야 할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지정하여 관리
- 메밀, 밀, 대두, 견과류, 복숭아, 토마토, 난류, 우유, 육류, 갑각류, 고등어,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아황산 포함 식품 등
- 연령별로 주의해야 할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만 0~24개월	25개월~만 5세
계란, 우유, 땅콩, 대두, 밀	계란, 우유, 땅콩, 대두, 견과류, 밀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9).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건강·환경·위생·급식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뉴스레터(<http://www.e-la.co.kr/child/2019/vol3/sub8.html>)  
19년 3월호 전문가칼럼 영유아 음식을 섭취 시, 알레르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고



어린이집 입소 시 보호자 면담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 여부를 확인

- 관련자료. 20년 보육사업 안내.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간식 제공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관련자료. 20년 보육 사업 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





## 【심화】

## 주제 4. 가스



## ① 연료용 가스 종류



## 1) 공기보다 가벼운 액화천연가스(LNG, 일명 도시가스)

-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연료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되면 위로 상승
- 가스무게 : 공기의 약 0.5배
- 누출 시 특유의 가스냄새가 있으며 체류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 2) 공기보다 무거운 액화석유가스(LPG)

- LPG는 주로 용기에 의하여 공급받는 가스로 프로판 및 부탄이 주성분이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바닥 등 낮은 곳에 고임
- 가스무게 : 공기의 약 1.5배
- 누출 시 특유의 가스냄새가 있으며 체류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 ② 자율 안전점검



## 1) 사용 전 : 환기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 조치
- 가스레인지 등 가스 연소기 주위에 가연성 물질(종이, 스프레이 등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치우도록 함

## 2) 사용 중 : 점화 확인

- 점화할 때에는 파란 불꽃이 붙었는지 점화 여부를 확인
-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

## 3) 사용 후 : 밸브 잠금

-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연소기 콕과 중간밸브를 모두 잠금
- 휴원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의 경우 계량기 전단에 부착된 메인밸브를 잠금

## 4) 평상 시

- 연소기, 배관, 고무호스, 가스렌지 호스 연결부분 등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수시로 비눗물과 가스냄새 여부로 확인





## 【심화】



-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입상밸브 및 건물 내외부의 금속배관에 부식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녹 제거 및 부식방지도장(페인트) 조치
- 고무호스 및 압력조정기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 자체없이 교환  
※ 권장사용기간: 고무호스 7년, 압력조정기 6년
- 가스누출경보기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막음 조치 여부 확인
- LPG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옥외에 빗물이나 직사광선 피하여 보관 여부 확인

### ③ 가스누출 시 단계별 대처요령



#### 1) 밸브 잠금

- 연소기 콕,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계량기 전단밸브)를 모두 잠금



#### 2) 환기

-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충분한 환기조치

#### 3) 화기 조심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스파크는 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로 사용금지

#### 4) 점검 요청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도시가스회사, LP가스 판매업소)에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

### ④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



#### 1)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이탈, 파손, 막힘 여부를 확인

- 특히, 겨울철에 배기통 끝의 고드름 낙하에 따른 파손 및 이탈 주의

#### 2) 가스보일러에 이상소음, 진동, 배기통 이탈 및 파손 등이 발견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가스공급자(도시가스사, LPG 판매업소) 등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의뢰





## 【심화】



## 3) 가스난로 등 난방기 사용 중 수시로 환기



## ❸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



## 1) 타이머콕

- 가스 사용 시간을 설정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잠가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

## 2) 과열방지 장치가 장착된 가스레인지

- 조리기구(냄비, 솥 등) 표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온도( $260^{\circ}\text{C}$ ) 이상이 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내장된 가스레인지



&lt;타이머콕&gt;



&lt;과열방지 장착 가스레인지&gt;

## ❹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가스)



## 1) 가스 사용 중 지진 발생

- 가스 불을 끄고 연소기 콕, 중간밸브를 잠금
- 도시가스 시설은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를 잠그고 LPG 시설의 경우는 용기 밸브를 잠금





## 【심화】



### 2) 지진발생 후 안전조치

- 집에 들어오면 가스레인지, 라이터 등 전기 및 화기 사용 금지
- 창문, 출입문 등을 열어 충분한 실내 환기조치
- 호스, 연소기, 배관 등의 이음부를 비눗물(주방세제+물)로 점검
- 누출이 확인되면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 ☞ 사고사례 - 조리 중 화재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원아들의 간식을 만들기 위해 가스불에 기름을  
끓이다가, 교재교구 정리를 위해 약 1~2분 정도  
조리현장을 이탈함. 다시 부엌으로 가보니  
달궈진 기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스레인지  
옆과 후드장치에 불이 타올라 응급조치로  
진화작업을 함



##### ◇ (예방 수칙)

조리 시 조리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급한 용무  
시 다른 교직원에게 주시 부탁 /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분말소화기와 유류화재에  
대비한 K급 소화기 함께 설치



## 02

## 실외 환경영역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1 옥외놀이터

2 담장/울타리, 기타 공간

3 외부 공간(활동)



## 1. 옥외놀이터

## 사례 ① : 천천히 차례차례 미끄럼틀을 타요

교과  
목록

## 가) 옥외놀이터 설치 및 관리

- 영아용과 유아용 놀이터를 따로 구분하여 적합한 크기의 놀이기구 설치
- 영유아들이 질서 있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안내
- 영유아들끼리 다툼이 생기기 전에 사전 개입을 통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놀이시설 볼트, 너트 등 돌출물 관리 및 이음장치, 구조물의 부식 점검 필요
- 모래놀이터는 무게감 있는 덮개로 덮어 놓으며, 주기적으로 살균 소독
- 야외 놀이도구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 놀이터 이용 안전 수칙 게시 권장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 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놀이시설의 볼트, 너트 등 ○○○ 관리 및 이음장치, 구조물의 ○○ 점검 필요



## 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요약)

-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관련법령.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 &lt;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gt;

구분	내용
안전점검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검사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
안전점검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안전진단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이용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록 보관
안전교육 이수	인천관리자 변경 및 시설을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해야 함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시 8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중대사고보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상품 문의 (Tel 1600-0611)

출처 :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

Q)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실내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A)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인 어린이놀이기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인 완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lt;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gt;

구분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안전확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설치방법	설치업자가 설치	개인이 구매 설치 가능
고정여부	주로 고정식	주로 이동식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20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은?

- 관련법령.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20조(안전 교육)

- 관련법령.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보험의 종류 등)



2. 담장 및 울타리, 기타 공간 사례 ① :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어요



&lt;강풍으로 인한 지붕 파손&gt;



&lt;집중호우로 인한 침수&gt;

A  
빗물, 호재

### 가) 태풍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홍수, 낙뢰, 천둥 등이 잦아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기상변화에 대비가 필요

- 강풍 대비 요령
  - 간판/담벼락 등 고정/접착 여부 주기적 확인
  - 특히, 여름철 폭염 시 놀이기구나 지붕재/실외 천정재 등의 접착 성능 저하로 탈락 발생
- 호우 대비 요령
  - 호우 예상 시 저지대/지하시설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 ※ 차수막/모래주머니 설치, 배수로 정기 청소 등
  - 산사태 등으로 인한 옹벽/담장 붕괴 대비
  - 노후화된 건물 외벽(창틀 부근) 균열된 틈(크랙) 점검 · 수리
    - ※ 호우시 건물 틈으로 들어온 빗물로 인해 발생한 전기 합선 화재 유발



&lt;배수로 막힘\* 방지&gt;



&lt;균열된 창틀&gt;

\* 우수 드레인에서 집수정을 통해 흥배수관으로 연결되는 배수로를 깨끗하게 관리



호우시 건물 틈으로 들어온 ○○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 합선 ○○ 유발



## &lt; 태풍 대비 요령 &gt;

태풍예보 시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경우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발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실내외의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점검 및 조치하기</li> <li>• 원아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하기</li> <li>•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예보 수시 확인하기</li> <li>• 실외활동이나 야외활동 연기하기</li> <li>• 원아 및 부모 대상의 태풍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속보 수시 확인하기</li> <li>• 지역 실정에 맞게 휴원 또는 단축보육을 검토하기</li> <li>• 원아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하기</li> <li>• 천둥·번개가 칠 경우 실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하기</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08),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풍수해특약 상품 문의(Tel. 1600-0611)



Q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은?



## 2. 담장 및 울타리, 기타 공간 사례 ② : 놀이터 바닥이 얼었어요(대설 · 한파)



미끄럼방지대

## 가) 대설

- 현관 입구에 미끄럼방지대를 깔아 놓고, 어린이집 입구에 물기를 수시로 제거
- 창문이나 방문의 틈새를 막아 실내 온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
- 보일러 배관,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천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태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
- 눈 녹은 물이 어린이집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지 점검
- 설해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차량에 구비
- 계획된 바깥출입(야외활동 등)을 취소하고 영유아는 실내에서 가벼운 활동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은 금지
- 차량운행은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할 경우 설해 대비용 안전장구 장착
-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및 휴원조치



대설 시, 현관 입구에 ○○○○○○를 깔아 놓고, 어린이집 입구에 물기를 수시로 제거



**〈겨울철 한파와 대설대비 건강수칙〉**

- 영유아의 체온과 실내온도 자주 확인하기
  - 적정 실내온도(18~20°C)를 유지하고,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
  - 따뜻한 물 등 수분 섭취 및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로 체온 유지
- 따뜻하게 옷 입기
  - 영유아가 등·하원 시 체온유지 용품(모자, 마스크, 장갑, 부츠 등)을 착용하도록 사전에 가정에 안내
  -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팔 상의를 착용하여 피부가 직접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옷으로 여러벌 겹쳐 입어 더울 시 하나씩 벗도록 하며 물에 젖게 되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힘
-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기
  - 계획된 바깥출입을 취소하고 실내에서 가벼운 활동을 하도록 함
  -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천천히 잔걸음으로 걷고, 계단 이용 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겨울철 한파와 대설대비 건강수칙



## 2. 담장 및 울타리, 기타 공간 다양한 자연재난(지진, 폭염 등)에 대비해요~

### 가) 지진

<p><b>&lt;1단계&gt; 지진발생 감지 및 알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첫 감지자는 큰 소리로 지진 발생을 알리고, 지휘명령총괄(원장)에게 연락</li> </ul>
<p><b>&lt;2단계&gt; 안전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피자들(영유아, 보육교직원 등)은 현재 위치에 가깝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보호  ★ 지진대피 3대 원칙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옆드려      가려      붙잡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단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가스, 전기를 신속히 차단(2차 피해방지)</li> <li>▶ 출입구 확보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대피 가능한 출입구(문, 창문)를 개방</li> </ul>
<p><b>&lt;3단계&gt; 피난장소로 이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반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비상연락처 지참</li> <li>▶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비상연락처 지참</li> <li>▶ 구급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비상용품(비상기기, 비상약품, 물 등)을 신속히 챙김</li> <li>▶ 지진이 멈추면 피난 경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피난장소로 이동(근처 공원, 광장 등)</li> </ul>
<p><b>&lt;4단계&gt; 부상자 확인 및 응급처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는 영유아 부상자 확인</li> <li>▶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부상자 확인</li> <li>▶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 등에 연락</li> </ul>
<p><b>&lt;5단계&gt; 재해정보 확인/ 보호자연락 후 인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정보 담당 보육교사는 비상기기(라디오, 핸드폰 등)로 재난방송을 통해 지진상황을 확인</li> <li>▶ 보육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안전하게 인계</li> <li>▶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피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li> </ul>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지진 관리·대응 매뉴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5) 재구성

Q 지진발생 시 대응 순서를 나열하시오.

- (1) 안전확보 (2) 피난장소로 이동 (3) 재해정보 확인/보호자연락 후 인계
- (4) 부상자 확인 및 응급처치 (5) 지진발생 감지 및 알림



## 나) 폭염

- 폭염 질환 예방 및 행동요령
  - 가볍고 헐렁한 면 소재의 복장 착용
  - 창문에 차단막 설치하여 실내 햇빛 유입 줄이기
  - 냉방기기 바르게 사용
    - 실내온도 적정(26~28°C) 유지 및 정기적 환기
    - 선풍기 등 과열로 인한 화재 방지 유의
  - 고위험군(어린이) 건강관리 철저
    -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시간 갖기
    - 이상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시행

- 관련자료. 보건복지부 (2011). 「보육시설 관리자용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

증상	응급조치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근육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li> </ul>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li> <li>•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셔 체온을 식히도록 함</li> </ul>



## 〈Tip〉 교사지도

- 폭염 등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달궈진 미끄럼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영유아 놀이기구 이용 전 온도를 확인하고, 피부와 직접적인 마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폭염 발생 시 대비요령〉

폭염주의보 발생 시	폭염경보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활동의 자제 및 실내활동으로 대체하기</li> <li>• 보육실을 시원하게 유지, 편한 복장으로 활동하기</li> <li>• 활동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거나 피곤해하는 영유아는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li> <li>• 낮잠시간을 충분히 갖되, 교사들도 잠깐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활동의 중단 및 실내활동으로 대체하기</li> <li>• 창문 등에 커튼 치기</li> <li>• 보육실을 시원하게 유지, 편한 복장으로 활동을 무리하게 계획하지 않기</li> <li>• 활동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거나 피곤해하는 영유아는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li> <li>•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절히 조치하기</li> <li>• 낮잠시간을 충분히 갖되, 교사들도 잠깐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11). 보육시설 관리자용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  
보건복지부(2008).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심화】

## 주제 5. 석면



## ① 어린이집 석면 관리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 조사의무대상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 관련법령 「석면안전 관리법」  
(2018.5.29. 개정, 2019.5.29. 시행)

"2019년 5월 2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입니다."

다만,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석면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법령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규칙부칙 2제2조

-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
  - ① 2019년 5월 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 ②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이며,
  - ③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환경부 생활환경과(2019).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신청 안내서

## ② 어린이집 공간 내 석면 함유물질 예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천장재	텍스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	내용	텍스의 훼손된 부분을 통해 내부가 보이는 경우
바닥재	바닥이 찢어진 경우	내용	바닥면이 많이 드러난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석면관리 매뉴얼



## 2. 담장 및 울타리, 기타 공간 사례 ③ : 강아지가 화났어요

어린이집



## 가) 기타 공간

## • 텃밭

- 농기구 및 약품은 전용 창고 등에 관리하여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함
- 아외의 다른 놀이 공간과 구별

## • 실외 동물사육장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 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함

- 관련자료. 20년 보육 사업안내. 다.위생관리 3)동물관리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애완동물, 곤충)을 두어서는 안 됨



### 3. 외부활동(바깥놀이, 현장학습 등) 사례 ① : 성인용 운동기구에 손가락이 눌렸어요



방언영어

#### 가) 실외활동 시 안전수칙

- 실외활동 전 사전답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반드시 제거
- 실외활동 전에 비상약품을 챙기고, 영유아의 옷차림(모자끈, 운동화끈 등)을 살핌
- 차량, 골목길, 교통안전 등의 유의사항,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이탈행동이 빈번하거나 활동성이 큰 영유아는 보육교사가 더 주의하여 살핌
- 실외활동 종료시간을 사전에 알려줌
-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으로 대체

- 관련자료.보건복지부 (2019).고농도 미세 먼지 대응매뉴얼 (어린이집용)



실외활동 전에 ○○○○을 챙기고, 영유아의 옷차림을 살핌





## 【심화】

## 주제 6. 미세먼지 / 실내공기질



## 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



##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의일예보))
-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체(실내 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 청정기 관리 및 가동 등)

\*외출 자체,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 지역 인근 측정소  $PM10\ 81\mu g/m^3$  또는  $PM2.5\ 36\mu g/m^3$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뉴스레터(<http://www.e-la.co.kr/child/2019/vol2/sub5.html>)

19년 2호 전문가칼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응방법 참고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7). 관계와 귀기울임으로 만들어가는 유아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연구 참고

- '20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113페이지 참조

## 2) 단계별 대응요령(어린이집)

단계	대응 요령
평시	<p>〈 사전 준비사항 포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li> <li>• 공기청정기 관리(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외부 필터 청소, 바람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등)</li> <li>•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체(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li> <li>•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li> <li>•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li> <li>•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li> <li>•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li> <li>•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li> </ul>

- 보건복지부(2019).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어린이집용)





## [심화]



단계	대응 요령
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실외활동단축, 일정연기 등) 마련</li> </ul> </li> <li>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파악,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li> </ul> </li> <li>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 여부 확인</li> <li>•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µg/m³, PM2.5 35µg/m³) 준수(24시간 평균)</li> </ul>
고농도 예보	<p>〈의일예보 “나쁨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li> <li>의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실내활동으로 대체 여부 검토 등)</li> <li>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li> </ul> </li> </ul>
고농도 발생	<p>〈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li> <li>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li> </ul> </li> <li>실외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li> <li>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li> <li>실내공기질 관리(예: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li> </ul>
주의보	<p>〈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li> </ul> </li> <li>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li> </ul>
비상 저감조치	<p>〈PM2.5 주의보 수준 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시 임시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① 내일 ‘매우 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µg/m³ 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li> </ul> </li> <li>※ 다만, 휴원 등 권고 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체’ 사전 안내 (미등원 시에도 출석 인정)</li> </ul> </li> <li>차량 운행제한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체</li> </ul> </li> </ul>
경보	<p>〈PM10 300 이상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외활동 금지</li> <li>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요령과 동일</li> </ul> </li> <li>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li> <li>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li> </ul>





## 【심화】



## ② 실내공기질 안전관리



- 면적 430㎡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20.4.3. 시행)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 · 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임

**〈Tip〉 어린이집 공간별 실내공기 관리방법**



• 보육실

✓ 주요관리 인자 : 세균

- 수업 활동 외에 식사 및 간식 등의 섭취가 이루어지는 공간 특히, 어린이집에서 부유세균의 농도가 높게 관찰됨. 부유세균의 일부는 진균증, 폐렴, 기관지 감염, 피부감염, 폐질환 등을 유발
- 공간별, 계절별 온도 차가 급격히 나지 않도록 관리
  - 겨울철 18~21℃, 여름철 24~27℃, 습도 40~60% 유지
  - 식사 및 간식 후 반드시 환기를 하며 주변 청결히 청소

✓ 주요관리 인자 : 화학물질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교구 및 매트, 장난감에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여러 화학물질이 함유됨.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호르몬 기능 이상, 면역 기능 이상, 피부염,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일으킴

- 환경마크 제품 사용
- 새로 구입한 교구나 매트, 장난감 등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며, 활동 후 환기하도록 함
- 입에 넣거나 뺏지 않도록 하며 활동 후 손 씻기

출처: 환경부(2019).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 [심화]



## [부록] 공기청정기 효율적인 사용방법 안내 ☀

## 1단계

## • 환기

환기는 실내에 정체되어 있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해 오염물질을 제거 및 희석하여 줍니다. 실내 환기는 하루 30분씩 3번에 나누어 합니다. (오전 9시 ~ 오후 8시 사이 환기 시 가장 효율적입니다.)

## 2단계

## • 정기적인 청소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보육실 및 유희실 등의 먼지 농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내 사용 중인 다양한 취사 도구, 전기기구 등으로부터 다양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청소 시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청소를 실시합니다.

## 3단계

## • 실내습도 유지

건조와 환기 습도 조절을 통하여 집안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발생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온·습도 : 온도 18~22°C, 습도 40~50%(습도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집먼지 진드기의 번식이 억제)

## 4단계

## • 냄새 오염 원 제거

음식 조리 시에는 미세먼지 및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됩니다. 반드시 환기구 가동 및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음식 쓰레기를 장기간 보관 시에는 부패로 인한 냄새 및 유해가스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음식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 5단계

## • 공기청정기 가동

위 4단계의 관리를 하신 후 24시간 괴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가동합니다. 공기청정기는 환기 및 냄새오염원을 직접 제거 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잔류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장치로 활용합니다. 또한, 내부필터 교체주기 점검, 외부필터 주기적 청소, 바람 흡입구 및 퇴출구 먼지제거 등으로 공기청정기를 유지·관리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2019).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어린이집용)

공기청정기 효율적인 사용방법은 「환경부 고시 주택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위 4단계의 관리를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셔야 필터의 수명이 오래 갑니다.



NEW ★★

## 3. 외부활동(바깥놀이, 현장학습 등) 사례 ② : 트램펄린에서 미끄러졌어요.



## 가) 실외활동(키즈카페 등) 시 안전점검 사항

- 키즈카페는 어린이집과 달리 규모가 큰 놀이공간으로 영유아가 쉽게 흥분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음
- 한꺼번에 여러 공간에서 놀이하기보다는 두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시간과 순서를 정해 놀이규칙을 회상한 후 놀이하도록 안내
- 트램펄린 이용 중에 영유아가 뛰거나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와 그물 등의 안전성 점검
- 트램펄린의 경우 몸무게가 비슷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이용
- 기구를 감싸고 있는 완충재(스펀지 등)를 고정하는 케이블 타이 등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영유아가 다치지 않도록 마감처리 확인
- 에어바운스형 놀이기구는 기구 표면과 피부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므로 양말 및 토시 등을 착용

- 관련자료.행정안전부(2018).알기쉬운 키즈 카페 운영지침



실외활동(키즈카페)에서 에어바운스형 놀이기구는 기구 표면과 피부 마찰이 자주 발생하므로 ○○ 및 ○○등을 착용



### 3. 외부활동(바깥놀이, 현장학습 등) 사례 ③ : 방금 도착한 오토바이

화면  
전회

#### 가) 현장학습(관람, 체험, 견학 등)

##### • 현장학습 전 준비사항

- 계획 수립 : 연간 보육계획 수립, 영유아 건강 및 날씨 고려, 학부모 의견 수렴
  - 부모 공지 : 문서(가정통신문, 보육계획안 등) 및 동의서(참여 유무, 부모서명)
  - 사전 답사 : 동선 파악, 위험 요인 확인 / 영유아의 이동 동선에 따른 위험 요소 확인, 화장실, 의무실과 함께 인근 병원도 미리 확인
  - 계획표 및 시간별 세부일정 작성 : 전반적인 계획표 / 교사 역할 분장
  - 영유아 및 보육교사 안전교육 실시 : 구조법 및 응급처치 요령 숙지
- ※ 교사는 응급상황 시 연락할 영유아 보호자 전화번호 목록 지침
- 영유아에게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름표 착용
  -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확인

##### • 현장학습 중 주의사항

- <도보> 이동 시 전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빨리 걷도록 재촉하지 않기, 인원 체크
- <차량> 영유아 신체구조에 따라 조절 가능한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부 안전 사항 살피, 안전하게 하차, 인원 체크

##### • 현장학습 후 확인사항

- 인원 및 소지품 확인 : 최종 인원 점검, 소지품 확인
- 손 씻기 및 건강상태 확인 : 손 씻기, 건강상태 살피
- 평가표 작성 : 활동 관련 평가, 안전 관련 평가



보육교직원은 현장학습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상황 시 연락할 영유아 보호자의 ○○○○ 목록을 지침하여야 함



## 3. 외부활동(바깥놀이, 현장학습 등) 사례 ③ : 차량탑승 발판에 걸려 넘어졌어요



## 가) 통학차량 운행 관련

## • (운행신고)

- 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9.2)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 시 행정처분 :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 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 ②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차량 내 금연표시)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자료. 20년 보육 사업안내.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 버스의 신고 등) 참조

- 관련법령.「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참조

## 나) 운전자 등 동승자/담임교사 관련

## • (운전자 관리)

- ①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② 운전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입력해야하는 시스템은?

-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 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참조



## • (운전자 의무)

- ①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②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 ③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④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 ⑤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함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전원 등 임의조작을 통해 미운영 금지
  - 추가적으로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통학차량 내 혼자 남아있는 영유아가 스스로 눌러 경고할 수 있도록 설치 권장

## • (동승보호자/동승자 관련)

- ①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동승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사이버교통학교-회원 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 ② 최초 교육 이수 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 재이수 필요 (보건복지부가 필요시 별도 안내 예정)
- ③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④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⑤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⑥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운행을 마친 통학차량에 남아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는?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 참조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 • (담임교사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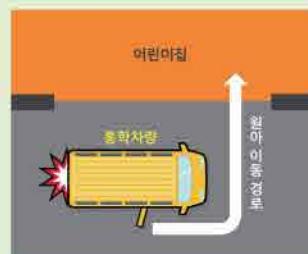
- ①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60

## ※ 추가 사고사례 – 차량 후진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 \* 등원 중 차량 오른쪽(출입문)이 어린이집 입구 반대편을 향하도록 차를 정차시키고 영유아를 하차시킨 상황에서 만 2세 아이 홀로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다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짐



## ◇ (예방 수칙)

- \* 운전자는 차량 후진 시 영유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영유아의 모습이 자동차에 가려질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나 보호자에게 인계되었는지 확인 후에 출발함
- \* 교사는 영유아가 차량의 앞·뒤를 횡단해야 할 경우 안전하게 횡단하였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함



## 더 알아보기!!\_ 통학차량 차령

## 통학차량 차령(車齡) 요건

- 2015년 7월 20일 신설 개정(2019년 시행)된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유상운송용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9년까지(정기검사 기준 충족으로 연장되더라도 1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운행할 수 있음

## ※ 주의사항

1. 운송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차령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2. 차령 기산일 기준
  -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 최초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명사.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

-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10년까지 운행할 수 있음



쉬어가기  
(休)

## 알아보고! 풀어보고! 가로세로 낱말 퍼즐

	①			②	②				
①								③	
				③					
						④			
④									
⑤			⑤			⑥			
							⑦		
			⑥				⑧		
⑦						⑨			

### 〈가로열쇠〉

- ① 「매우 심한 더위」를 일컫는 말로 위험시간(한낮)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하는 자연현상
- ② 몸에 오른 열을 푸는 것으로 섭씨 39도 이상일 경우 복용
- ③ 소화 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세로열쇠〉

- ① 물품이 타지 않는 것뿐만 아닌 시간을 지연시켜(천천히 팀)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
- ② 불, 뜨거운 물, 증기, 뜨거운 액체 등에 의하여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화상의 종류
- ③ 어린이집 내 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



- ④ 가스 사용시간을 설정하여 시간이 경과 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잠가 과열에 의한 사고예방
- ⑤ 어린이집 내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 ⑥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 ○○을 포함하여 산정
- ⑦ 벌, 곤충 등에 물렸을 경우 쏘이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 후에 이것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킴
- ⑧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마스코트로, 안전(safe)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며,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천사
- ⑨ ○○○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
- ④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림. 또는 그런 보도를 일컫는 단어로 자연재해 등 미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
- ⑤ 실내에 있는 사람의 건강과 평안에 영향을 주는 공기의 오염수준으로 세균, 화학물질 등을 측정하고 시설을 관리
- ⑥ 병원에서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방
- ⑦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흘날려 내려오는 10μm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00분의 10mm 이하)과 PM2.5(1000분의 2.5mm 이하)로 구분

## (정답)

	① 방		② 해	② 열	제				
① 폭	염			상		③ 덤			
		③ 소	화	기		웨			
			상		④ 타	이	머	콕	
④ 예						터			
⑤ 보	육	⑤ 실			⑥ 응				
		내			급	⑦ 미			
		⑥ 공	동	놀	이	실	⑧ 세	피	
		기					먼		
⑦ 냉	찜	질				⑨ 접	지	극	



### 제3장

##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학습목표

- ▶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절차를 이해한다.
- ▶ 안전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방법을 숙지한다.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차 사고 후 적절한 대응 조치는 **추가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 장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 숙지하도록 합니다.

###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① 안전사고 대처법
- ②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 01

## 안전사고 대처법

## 가)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교사가 당황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영유아나 나머지 영유아들이 함께 당황해 하거나 더 불안해 할 수 있음
    - 사고를 파악할 때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판단
  -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법 실시
  -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
  - 부모에게 연락
  -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킴
  - 사고보고서를 작성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 어린이집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보육교직원의 자세

- 모든 보육교직원은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처치 관련 심폐소생술은 실습을 통해 습관적으로 훈련되도록 별도 수료 권장
  - 보육교직원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http://www.e-gen.or.kr)) 및 모바일 앱(응급의료정보 제공, E-GEN)을 통해 어린이집 인근 **AED 위치** 확인 필요
- 보육교직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필요한 물품이 갖추어진 구급상자를 준비함
  - 구급상자에는 응급전화번호, 약품의 사용방법 등을 부착함
- 영유아의 비상연락망,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응급절차 목록 등을 전화기 옆에 비치
- 야외활동을 나갈 때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함
-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부모동의서를 받도록 함

- 관련자료. 심화8. 응급처치.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참고

### 다)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 /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다 해로운 일임
-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함
-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함
-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 ※ 응급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 ①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 ②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 ③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 ④ 환자의 수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급적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함. 특히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하며, 심각한 손상, 심한 출혈 등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수술 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
- 부상자 운반 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야외활동을 나갈 때,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와 ○○○○○을 준비함



## 02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 1. 찢어짐

## 사례 ① 뾰족뾰족 종이 모서리



## 가) 찢어짐(타박상, 찰과상 등)

- 가벼운 상처의 경우 깨끗한 상처는 항생제 연고를 얇게 바르고 밴드를 붙임
- 더러운 상처인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 후 물기를 깨끗한 거즈(무균)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 등을 붙임
- 더러운 상처 중 토양, 분변, 타액에 오염된 상처, 화상, 동상에 의한 상처 등은 파상풍 백신 접종 또는 파상풍 능동 면역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병원 방문이 필요
- 상처가 깊은(진피층까지 침범) 경우나 상처가 큰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흉터가 심할 수 있어 봉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 필요
- 병원 방문 시에는 아이가 무엇에, 어떻게 다쳤는지, 기준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아이의 예방 접종력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



병원 방문 시에는 아이가 무엇에, 어떻게 다쳤는지, 기준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먹고 있는 ○○이 있는지, 아이의 ○○○○○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



☞ 참고 ◇ 피부의 구조와 상처의 종류



찰과상 : 마찰에  
의하여 피부의  
표면에 입는 상처



타박상 : 외부의  
힘(충돌 등)이  
피부의 넓은 면에  
가해질 때  
생기는 상처



절상 : 끌이  
예리한 물체(칼,  
유리, 파편 등)에  
의해 피부가  
잘려져 입는 상처



자상 : 끌이  
예리한 물체(못,  
창 등)에 의해  
피부가 찔려서  
입는 상처



열상 : 외부의  
자극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입는 상처

출처 :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MEMO



## 2. 치아 손상

## 사례 ① 졸리지 않은 낮잠시간

A 씹는 생리식염수



## 가) 치아 손상

- 부러진 이가 땅에 떨어졌다면 부러진 치아의 씹는 면을 잡고 생리식염수를 부어 씻어낸 후 차가운 흰 우유에 넣은 다음, 얼음팩과 함께 아이스 박스에 넣어 30분 이내에 치과로 가져감
- 영구치가 빠졌는데 영구치와 유치 구별을 하지 못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부모와의 통화) 후 조치함



부러진 치아의 ○○면을 잡고 ○○○○○를 부어 씻어낸 후 치과로 가져감



## 3. 골절 / 탈구

사례 ① 소매를 걷다가 손목이 탈구되었어요

A  
골절/탈구

## 가) 골절 / 탈구

-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에 방문
-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부목이 있다면 부목으로 고정하거나 없다면 나무판, 박스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함
-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야 하는 안전사고는?



## 4. 화상

## 사례 ① 생일축하 파티



## 가) 화상

- 화상 부위를 물(수돗물 등) 또는 생리식염수 등으로 흘려보내며 상처를 식혀주는 것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10~20분)
-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아주 살짝만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함
- 초기 대응 후 젖은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싼 뒤 신속히 병원 방문
  
- 주의사항
  - 물집을 제거하는 것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음
  - 크림, 연고,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 화상은 육안으로는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



(O,X 문제) 물집을 제거하는 것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는 것과 관계가 없음





## 【심화】

## 주제 7. 화상



## ① 화상유형별 대처



## 1) 열상 화상

-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환부를 흐르는 찬물로 10~20분 정도 충분히 식힘
-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

## 2) 흡입 화상

-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의복을 느슨하게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함
- 호흡 또는 심장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시작

## 3) 화학 화상

- 즉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학물질 제거
- 화학 화상은 3도 이상의 화상으로 간주하여 응급실 방문

## 4) 전기 화상

- 상처 부위가 크고 작은 것과 달리 모든 전기 화상은 3도 화상임
- 전기로 인한 화상은 외견상 보이는 화상보다 심한 내상을 흔히 동반
- 전기 감전 발생 시 함부로 환자를 직접 떼어내지 말고 일단 전기 스위치를 내려 전기 공급 중단
-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좌측 팔의 전기화상은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필히 응급실 방문

## ② 응급처치 및 생활가이드



- 뜨거운 물 혹은 불에 데인 경우에는 옷을 벗겨야 하는데 옷을 벗기거나 환부 부위의 옷을 자르는 행동은 가급적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하도록 즉시 응급실을 방문함
-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임의로 터트리지 말고, 물집이라도 절대 벗겨내지 않도록 함
- 상처 부위를 소독한다고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등의 자극성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음
- 화상 부위에 간장을 바르거나, 감자를 붙이는 경우 등의 민간요법은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창상 감염을 일으켜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초래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5. 물림

## 사례 ① 윙윙~ 벌이다!!



## 가) 물림(동물)

-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하며, 개방성 상처인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
- 병원에 방문하여 동물의 종류와 정황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
- 동물의 주인이 있을 경우 동물의 병력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설명하고, 야생 동물인 경우 물린 장소, 시간, 동물의 특징 등 사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함

- ◇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사후 사건 처리를 위하여 동물 주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놓도록 함
- ◇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과 신원을 기록
- ◇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일반 상처에 비해 감염률이 약 8~9배로 매우 높은 수준  
물린 상처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상처가 깊을 가능성이 크고 타액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의 깊이 등을 진단하도록 함

## 나) 물림(사람)

- 사람의 구강 내에는 입으로 물 때 옮겨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균들이 산재
- 사람에게 물렸을 때 만약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만약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 다) 물림(벌, 곤충 등)

- 침이 박혀 있을 경우는 침을 잡아당기지 말고 신용카드 같은 것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 침을 제거하고, 침 끝에 남아 있는 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당기거나 상처 부위를 쥐어짜지 않도록 함
- 이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로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연고를 바름
-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 후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킴

A  
심장

◇ 대부분의 곤충 물림은 물린 부분의 염증 반응만 몇 시간 정도 진행된 후 호전되나, 간혹 전신 두드려기, 감염,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에피네프린 주사의 투여가 늦어지면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곤충에 물린 아이가 입술, 얼굴, 팔 등이 심하게 붓거나, 두드려기, 호흡 곤란, 기침,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 방문 필요



곤충이나 벌 등 쏘인 부위를 ○○보다 높게 한 후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킴



## 6. 이물질 삼킴 사례 ① 물풀이 눈에 튀었어요.

▶▶▶



## 가)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코)

-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세차게 코를 풀도록 함
- 면봉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더 깊이 밀어 넣거나 점막 손상으로 코피를 유발할 수 있음
- 풀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코를 풀 수 없는 영아의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

## 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눈)

- 눈의 표면에 먼지가 붙어 있을 경우 눈꺼풀을 벌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흘려 씻어 내도록 함
- 영유아가 눈을 비비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눈을 비비지 않게 함
- 눈을 감개 하고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띠를 만든 후 눈을 가려 눈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OO편 콧구멍을 막고 세차게 코를 풀도록 함



## 6. 이물질 삼킴 사례 ② 비눗물을 삼켰어요

내  
리  
이  
**A**

### 가) 화학제품 사고 관련 – 한국소비자원(2018).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 중독사고 주의하세요

- 세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신체 일부에 접촉하거나, 음료 등으로 오인하여 마셔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 입으로 마시거나, 눈에 접촉하는 사고 다발(음용 77.5%, 안구 접촉 19.5%, 기타 3% 등)
- 어린이집에서는 활동자료로 세제, 화장품 등의 화학제품이나 콩, 씨앗 등 작은 곡식 등은 가급적 사용 자제
- 생활화학제품 사용 전 성분 확인(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활용 등)

### 나)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강산, 강알칼리 성분) 화학제품을 삼키거나 빨아 먹은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음
  - 억지로 구토하게 하는 경우 토사물 흡인, 식도 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
  - 입과 얼굴을 철저히 헹구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
  - 삼킨 제품의 성분에 따라서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도 심한 식도, 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
- 병원 방문 시 영유아가 삼킨 제품의 성분, 삼킨 양 등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전달
-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낸 후 병원 이동
- 피부에 접착제(본드, 풀 등)가 묻었을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과 세제를 이용해 제거



화학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 물로 씻어 낸 후 병원이동



## 7. 질식

## 사례 ① 동그란 비타민

NEW ★★



## 가) 질식(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경우)

- 기도가 막힌 경우
  - 음식물이나 사탕, 장난감 등이 기도로 넘어가 호흡이 막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을 감싸 쥐고 괴로워 할 때, 즉시 119에 연락하고 응급처치(하임리히법 등)를 실시
  - 이물 제거 시술 도중 반응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 가슴 압박 후 호흡을 하기 전에 입안을 들여다 보아 이물이 보이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물을 꺼냄 (단, 입안에 이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넣어 이물을 빼내려고 하면 이물을 인두 내로 더 깊게 밀어 넣거나 인두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빼내려고 하면 안 됨)



약물·음식 등이 목에 걸려 질식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은?





## 【심화】

## 주제 8. 응급처치



## ① 기도가 막힌 경우



완전히 막힌 경우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을 하지 못함</li> <li>- 기침을 해도 기침 소리가 나지 않음</li> <li>- 숨을 못 쉼</li> <li>- 청색증이 생기고 의식 흐려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을 함</li> <li>- 기침하면 기침소리가 남</li> <li>- 호흡이 가능</li> <li>- 의식이 온전함</li> </ul>

바로 구급차를 부름

-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을 속히 방문
-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 주위 다른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아래의 응급처치를 시행

- 관련자료. 육아정책 연구소(2017). 영유아 건강관리 가이드북 유치원·어린이집용

## 1) 1세 미만 영아가 완전히 기도가 막힌 경우

- ① 머리를 고정하고 등의 가운데를 5번 세게 침
- ②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바로 아래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5번 누름
- ③ 입을 열어 이물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①② 과정을 반복

## 2) 1세 이상 아이가 완전히 기도가 막힌 경우

- ① 아이의 뒤에 서서 아이의 허리를 팔로 감쌈
- ②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그 손의 엄지를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둠
- ③ 다른 한 손으로 감싸고 빠르고 강하게 위쪽으로 당겨 올림. 이물이 배출될 때까지 ①②③ 과정을 반복하고 의식을 잃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

## ② 심정지(심폐소생술)



-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보다 질식성 심정지가 훨씬 흔하기 때문에 영유아 소생술에서는 인공호흡이 매우 중요
- ※ 영아·만 1세 미만의 아기 / 소아·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 관련자료. 질병관리본부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심화]



## 〈기본소생술 흐름도〉

반응이 없는 소아환자 발견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무호흡 또는 비정상호흡(심정지 호흡)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인공호흡을 30:2로 반복)

▼ 자동제세동기 도착

자동제세동기 사용  
자동제세동기 음성지시에 따라 행동

제세동 필요

제세동 불필요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2분간 심폐소생술

## 〈기본 소생술 요점 정리〉

구분	성인	소아	영어
심정지의 확인	무반응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10초 이내 확인된 무맥박(의료제공자만 해당)		
심폐소생술의 순서	가슴압박 – 기도유지–인공호흡		
가슴압박 속도	최저 분당 100회 이상(최고 120회 미만)		
가슴압박 깊이	최소 5cm	가슴 두께의 최소 1/3이상 (4~5cm)	가슴 두께의 최소 1/3이상 (4cm)
가슴이완	가슴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이완		
가슴압박 중단	가슴압박의 중단은 최소화(불가피한 중단 시는 10초 이내)		
기도유지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	전문기도 확보 이전  전문기도 확보 이후	30:2  가슴압박과 상관없이 6초마다 인공호흡	30:2(1인 구조자) 15:2(2인 구조자)
일반인 구조자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	심폐소생술	





## 【심화】



### ⑤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 1. 전원 켜기

- ▶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켠다.



#### 2. 두 개의 패드 부착

- ▶ 유아의 경우 우측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좌측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밑에 붙인다.
- ▶ 영아의 경우 좌측 패드는 가슴 앞에, 우측 패드는 등에 부착한다.



#### 3. 심장 리듬 분석

- ▶ 물려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려나게 한다.



#### 4. 제세동

- ▶ 분석결과 '쇼크가 필요하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 충전이 완료되기 직전에 다시 물려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려나게 하고, 몸무게 1kg 당 2~4J로 쇼크 버튼을 누른다.



#### 5. 즉시 가슴압박 시작

- ▶ 쇼크가 끝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 ▶ 자동제세동기는 2분 후 자동으로 다시 분석단계를 시작한다.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9). 어린이집 안전가이드북





## 【심화】



〈TIP〉 현 위치 중심으로 내 주변 자동제세동기(AED)를 찾을 수 있어요!!

- 현 위치 중심으로 내 주변 AED 찾기
  - 내 주변에 있는 AED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점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60일 이내 점검 여부).
  - 내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병의원 및 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응급처치 관련 교육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은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 요망



[ 애플리케이션 활용 ]  
E-GEN(이젠)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보제공



## 8. 열성경련

## 사례 ① 해열제를 많이 먹었어요.

NEW ★★

어린이집  
의약 투약

## 가) 발작(경련) / 구토

- 경련은 열성경련이라 하더라도 경련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수 있고, 단순열성 경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경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련이 발생하면 경련이 멈췄더라도 일단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
- 영유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이나 억제를 하지 않고, 목과 허리 부분의 옷을 느슨하게 함
- 구토를 하거나 입 안에 구토물이 보이는 경우 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얹지로 입을 벌리지 않음  
 ※ 설입자 등(없으면 나무젓가락을 거즈로 말아서)을 사용하여 혀가 밀려들어가지 않게 함

## 나) 열이 날 때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해열제 · 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부모의 투약 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등)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  
 ※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서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해열제 복용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권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해열제, 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부모에게 받는 서류는?



## • 해열제

해열제를 복용하여야 하는 경우	해열제 사용 시 주의점	해열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섭씨 39도 이상</li> <li>• 몸시 불편해하고 보챌 때</li> <li>• 폐/심장 질환이 만성적으로 있을 때</li> <li>• 열성 경련의 병력이 있을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양, 4~6시간 간격을 두고 투여</li> <li>• 자주 사용은 금할 것</li> <li>• 자는 아이를 깨워서 투여하지 말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열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li> <li>• 영유아가 평상시처럼 잘 먹고 잘 놀며 잠을 잘 자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됨</li> </ul>

39

## • 해열제 종류

타이레놀(Acetaminophen)	이부프로펜(Ibuprof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6시간마다 10~15mg/kg (몸무게/kg당 0.3~0.5cc)로 사용</li> <li>• 하루 5회 이상 투여해서는 안 됨</li> <li>•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시간이 걸리므로, 복용 1시간 내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투여해서는 안 됨</li> <li>• 장기간 사용 시 간기능 및 신장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8시간마다 5~10mg/kg (몸무게/kg당 0.25~0.5cc)를 사용</li> <li>•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시간이 걸리고 타이레놀에 비하여 지속시간이 길며, 진통효과가 좋아 밤새 통증이 있거나 열이 있는 경우 사용</li> <li>• 큰 부작용은 없으며 소화불량이나 구역감이 5% 정도에서 생길 수 있고 아주 드물게 위장출혈, 신장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하게 토하고 탈수가 심한 영유아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함</li> </ul>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2017). 영유아 건강관리 가이드북 유치원·어린이집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뉴스레터(<http://www.e-ia.co.kr/child/2019/vol6/sub7.html>)  
19년 6호 아이가 열이나면 바로 응급실에 데려가야 할까요? 참고



영유아에게 섭씨 OO도 이상일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여야 함



## 9. 영아돌연사증후군

## 사례 ① 영아돌연사증후군



본 장정/방통이용



## 가)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정의 및 현황

- 정의 : 영아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는 종합적으로 영아돌연사(SUID: Sudden Unexpected Infant Death)라고 함
  - 그 중 영아돌연사(급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임상기록의 검사, 사망 현장의 검사, 완벽한 부검 실행을 포함하여 철저한 사건 조사 후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1세 미만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의

※ 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 시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안별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현황 : 계절별로는 겨울 및 환절기에, 시기별로는 생후 6개월 내 주로 발생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5년간) 국내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 건수는 총 379건으로 연평균 약 76건임
  - 이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공제회로 접수된 사례(추정 포함)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0건, 2018년 2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3.4건이며, 최근 감소 추세에 있음

※ 다만, 1세 이상의 영아 또는 유아의 경우도 SIDS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영상기록의 검사, 사망 현장의 검사, 완벽한 부검 실행을 포함하여 철저한 사건조사 후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1세 미만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 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안전수칙 (To Do / Not To Do)

## &lt;해야 할 일 To Do&gt;

- 수유 후 트림시키기
- 영아를 재울 때 등을 바닥에 대고 천장을 보도록 바로 눕힘
- 영아가 수면하는 바닥의 면이 단단해야 하며 덮지 않게 함
- 어둡지 않게 하여 수면 중인 영아의 얼굴을 살필 수 있어야 함
- 이불을 덮지 않거나 가벼운 이불로 영아의 가슴까지만 덮게 함(머리/얼굴을 덮지 않도록 함)
- 영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함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숙지함

## &lt;하지 말아야 할 일 Not To Do&gt;

- 영아가 자고 있는 주변에 위험한(푹신한) 물건을 두지 않음
- 영아와 같은 침대에 자거나 바로 옆에 눕지 않도록 함
- 흡연과 간접흡연 금지/방지

※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횟수와 무관))

●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영아돌연사증후군' 이렇게 예방하세요! ☀

### 우리 아기, '영아돌연사증후군' 이렇게 예방하세요!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6).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 스티커

## 부록 ①

##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점검 (소방, 전기, 가스)

설비종류		설치기준
소방설비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1 이상으로 설치 가능/ 소화기수령산정: 노유자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00㎡마다 1능력 단위 이상, 3.3kg소화기 3능력 단위
	스프링클러	바닥면적합 600㎡ 이상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	바닥면적합 300㎡ 이상 600㎡ 미만 바닥면적 합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無窓層)의 바닥면적 15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포함)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단독형감지기	구획된 모든 실(소방시설법 및 영유아보육법)

구분	정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주기	주체	비용
소방	간이스프링클러 및 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년 1회	자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체	신청자
전기	일반용 전기시설(용량 75kW 미만)		관할 전기안전공사	신청자
가스	도시가스 1종 보호시설(어린이집) ※ 월사용 예정량(1000㎡) 이상 시 실시 기준량 미달 시 의무 아니나, 지 자체별 상이	1년 1회	관할 가스안전공사	신청자
	LPG 1종 보호시설(어린이집)			지자체별 상이

- [명사][건설] 건축물의 지상층 가운데 소화 활동이나 피난 따위를 위해 마련해 놓은 층.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1 이하인 층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 관련법령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 관련법령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부록 ②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NIA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 실시결과 등록)

### ① 미디어(인터넷, 스마트폰 등)안전의 개념

- 미디어안전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기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
  - \*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 등
- 미디어안전을 통한 미디어기기의 적절한 활용은 영유아에게 시청각을 활용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

### ② 미디어안전교육 방법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 제출방법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or.kr> ) 공지사항 참고
- 영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미디어 교육에 대한 내용을 부모와 연계하여 교육



## 부록 ③

**승강기(엘리베이터, 덤휴이터 포함) 안전**

- 「승강기 안전관리법」(2019.3.28. 시행)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 승강기 관리주체란 ① 승강기의 소유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③ ①, ②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따라서, 어린이집이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 반드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공제 상품에 가입

※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2019년 9월 28일부터 미가입 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① 보험 가입**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 관리주체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에 입력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승강기 배상책임 공제상품 문의(Tel. 1600-0611)

- 관련법령 「승강기안전 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

-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



## 부록 ④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간물 (자료집, 영상·음원 등)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csia.or.kr](http://www.csia.or.kr)) > 자료실 > 교육자료실

연번	자료집	연도
1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길라잡이	2014
2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	2015
3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 스티커	2016
4	영유아 안전을 위한 보호자용 길라잡이	2016
5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6
6	관계와 귀기울임으로 만들어가는 유아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	2017
7	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2017
8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 : 자료 개발(안전교육계획안 작성법을 중심으로)	2018
9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부모용) 교수자료 개발 결과보고	2019
10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1권)-실내외 보육환경 (2권)-소방, 재난, 자연재해 (3권)-통학차량과 등하원 (4권)-건강, 환경, 위생, 급식 (5권)-어린이집 안전가이드북	2019
11	키워드(keyword)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	2019
12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사례집(소방 및 통학차량)	2019
13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	2019
14	생활안전 그림이야기 「놀이터야 안녕?」	2019



연번	영상/음원	연도
1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2015
2	소중한 생명 영아심폐소생술로 지켜요	2015
3	등하원 시 주의사항	2015
4	놀이시설 이용안전	2015
5	지켜보아요 안전약속	2016
6	안전 가나다	2016
7	세피와 함께하는 화재/재난 대피 요령	2017
8	픽토그램	2018
9	안전인형극—실외 생활 안전 세피와 함께 떠나는 안전 여행/ 실내 생활 안전 뒤죽박죽 곤충 나라	2019
10	세이프그램(safegram) 부모교육 자료	2019
11	나의 몸은 소중해요 / 분홍이와 초록이는 다른 곳이 있대요	2019



## 부록 4-1

## 도서 및 영상 활용법(2019년)

## ◆ 오리엔테이션 부모 안전교육자료



## ▶ 세이프그램[safegram]

- 제작목적: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착안하여 개발된 개발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개발
- 활용방법: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또는 부모 대상 안전 교육 시 활용
- 자료형태: 강의안 1부(PPT), 강의노트 1부

## ◆ 신학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자료



## ▶ 키워드[keyword]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

- 제작목적: 적응기간(3월~4월)에 발생하는 주요 안전 사고 유형 및 지도방안, 응급처치 안내
- 활용방법: 어린이집 적응기간 전 보육교직원 안전 관련 참고 내용
- 자료형태: 포스터(A2 사이즈) 1부

##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개정판)



##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전 4권) 및 어린이집 안전가이드 북(1권)

- 제작목적: 어린이집 안전관리 영역을 4개 영역(실내·외 보육환경, 소방·재난, 통학차량과 등·하원, 건강·환경·위생·급식)으로 분류하여 법규와 지침을 바탕으로 지켜야 하는 가이드 정보를 제공
- 활용방법: 원내 비치하여 상시 참고
- 자료형태: 도서 5권

### ◆ 유아중심 안전교육자료 - 놀이터 편



#### ▶ 생활안전 그림이야기 「놀이터야 안녕?」

- 제작목적: 놀이터에서의 안전한 놀이습관 형성을 위한 유아 대상 안전교육 자료
- 활용방법: 유아 대상 놀이터 안전교육 시 활용
- 자료형태: 8절(총 11장(22면)/set)

### ◆ 안전교육 영상 미디어



#### ▶ 영상미디어[나의 몸은 소중해요 / 초록이와 분홍이는 다른 곳이 있대요!]

- 제작목적: 아동복지법에 따른 5대 의무 안전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제작
- 활용방법: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 활용
- 자료형태: 애니메이션(5분)

###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3판)



####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3판)

- 제작목적: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보육 현장에 소개하고 사례에 따른 주의점 및 예방법 수록을 통하여 보육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자료로 활용
- 활용방법: 원내 비치하여 상시 참고
- 자료형태: 도서 1권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08).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_\_\_\_\_ (2013). 어린이집 석면관리 매뉴얼  
\_\_\_\_\_ (2019).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어린이집용)  
\_\_\_\_\_ (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대한소아과학회(2011). 보육시설 관리자용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지진 관리 · 대응 매뉴얼
- 소방청 홈페이지 [www.nfa.go.kr](http://www.nfa.go.kr)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길라잡이  
\_\_\_\_\_ (2015).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  
\_\_\_\_\_ (2016).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 스티커  
\_\_\_\_\_ (2019).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  
\_\_\_\_\_ (2019).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 vol3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www.snuh.org](http://www.snuh.org)
- 육아정책연구소(2017). 영유아 건강관리 가이드북 유치원 · 어린이집용
- 질병관리본부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http://kosis.kr)
- 한국소비자원(2018).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 중독사고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20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행정안전부(2018).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 환경부 생활환경과(2019).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신청 안내서
- 환경부(2019).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 홍창의(2016). 홍창의 소아과학 11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 심폐소생학회. 2015 Korea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 Kliegman, & Robert M [21eds.] (2019).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Elsevier Science Health Science
- Layug ML, Barrett EJ, Kenny DJ.(1998). Interim storage of avulsed permanent teeth. J Can Dent Assoc. 64(5):357
- Blomlöf L, Otteskog P, Hammarström L.(1981). Effect of storage in media with different ion strengths and osmolalities on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Scand J Dent Res. 89(2):180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발행인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기획/총괄	김기석 김심환 이미경 장미령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조사연구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조사연구팀	사무총장 국장 팀장 주임
디자인/편집	김 훈 신상진 김소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팀	팀장 대리 주임
감수/자문	배선희 (가나다 순) 안영민 이종희 정광훈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	주무관 교수 교수 팀장
디자인·인쇄	(주)현대아트컴		
발행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행일	제1판 2020년 3월		

※ 이 책에 실린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있으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영유아는 + 안전하게! 보육교직원은 행복하게!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수행을 통한  
영유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진행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대상 국외연수 실시



공모전 및 뉴스레터 운영으로  
영유아 안전 환경 조성



소방, 교통 등 맞춤형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보육현장 사례중심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영유아,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 정기가입안내

매년 2월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공제상품 정기 가입기간」입니다.

공제상품 가입을 통해 새 학기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상품 총 12종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집기/화재배상특약), 풍수해특약, 보증

안전한 보육, 행복한 동행

#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 Contents 목차

## PART 01 아동학대 예방

### I.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① 아동학대 개념	6
②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7
③ 아동학대 현황	10

### II.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5
② 아동학대 신고방법	17
③ 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	20

### III.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①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특성	23
②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	27
③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29

### IV.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① 정신건강의 이해	30
②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과 정신건강	31
③ 영유아·교사 정신건강의 실제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32

**PART 02 아동 성폭력 · 실종 예방****I. 아동 성폭력 예방**

① 아동 성폭력의 정의	50
② 아동 성폭력 현황	52
③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53
④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56

**II. 아동 실종 예방**

① 실종에 대한 이해	58
② 아동 실종 · 유괴 예방교육	60
③ 실종 · 유괴 예방수칙	63
④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64
⑤ 실종예방 관련 정보	66



PART

# 01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아동학대 예방

I .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II .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III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IV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I.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 01 아동학대 개념

### 1)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처벌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
-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함

-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를 가하거나(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지 않아(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의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모두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음

## 0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li> <li>-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li> <li>-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끌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림 등)</li> <li>-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li> <li>- 흔들린 아이 증후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li> <li>-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li> <li>-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li> <li>-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li> <li>- 담뱃불 자국, 화상 자국</li> <li>-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li> <li>-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li> <li>-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불게 긁힌 상처</li> <li>-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li> </ul>

##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li> <li>- 잠을 재우지 않는 것</li> <li>- 별거벗겨 내쫓는 행위</li> <li>-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li> <li>-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li> <li>-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li> <li>-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li> <li>-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li> <li>-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li> <li>-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학대를 지켜보도록 강요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li> <li>- 신체발달 저하</li> </ul>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li> <li>-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li> <li>-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li> <li>-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li> <li>- 언어장애</li> <li>-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li> <li>-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li> <li>-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li> </ul>

##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구체적인 행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li> <li>-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li> <li>-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li> <li>- 성교를 하는 행위</li> <li>-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행동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li> <li>-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li> <li>-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li> <li>-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li> </ul> </li> <li>*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li> <li>-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인 행동</li> <li>-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li> <li>-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li> <li>-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li> <li>- 수면장애</li> </ul> </li> </ul>

## 4)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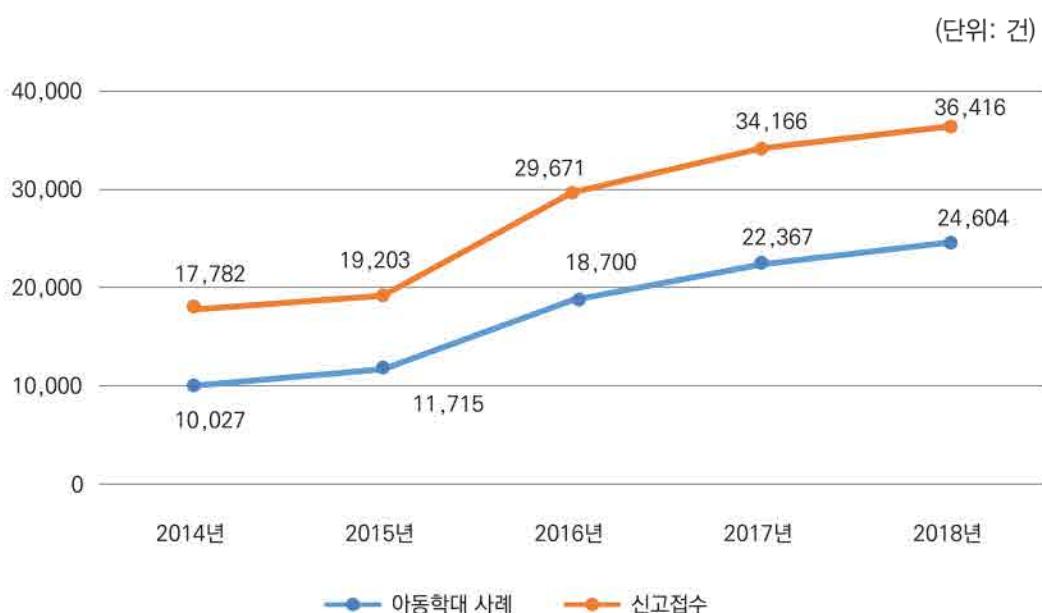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li> <li>-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li> <li>-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li> <li>-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기출한 경우 등</li> </ul> </li>   <li>* 교육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에 무단 결석을 시키는 행위</li> </ul> </li>   <li>* 의료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li> </ul> </li>   <li>*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li> <li>-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li> <li>- 비위생적인 신체상태</li> <li>-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li> <li>-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li> </ul>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li> <li>-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li> <li>- 비행 또는 도벽</li> <li>-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li> <li>-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li> <li>- 잦은 결석</li> </ul>

## 03 아동학대 현황

### 1) 아동학대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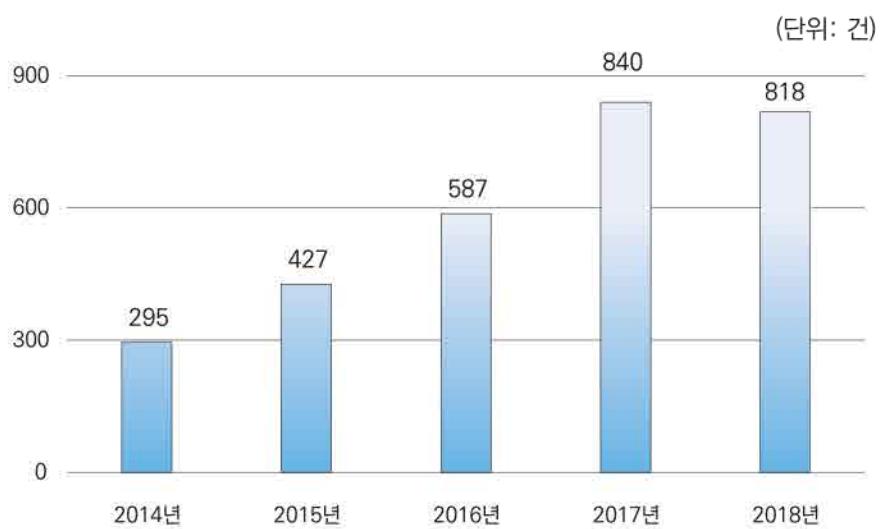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건수는 총 36,416건으로 전년도 34,166건보다 약 6.6% 증가하였음
- 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결과는 총 24,604건으로 전년도 22,367건보다 약 10.0% 증가한 것으로 2014년에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그림 1-1]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발생 건수

##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현황

- 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818건(3.3%)으로 나타남.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2건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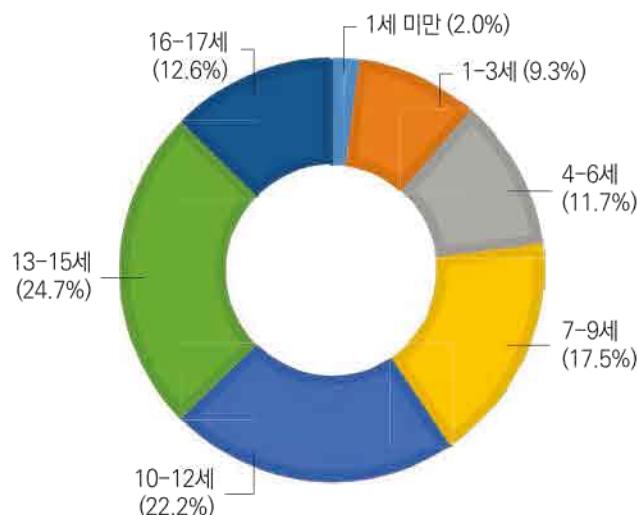
[그림 1-2]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

## 2)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 피해아동 연령은 만 13~15세가 전체 24.7%로 가장 높았으며, 만 6세 이하도 5,660건으로 전체 23.0%로 나타나 영유아 학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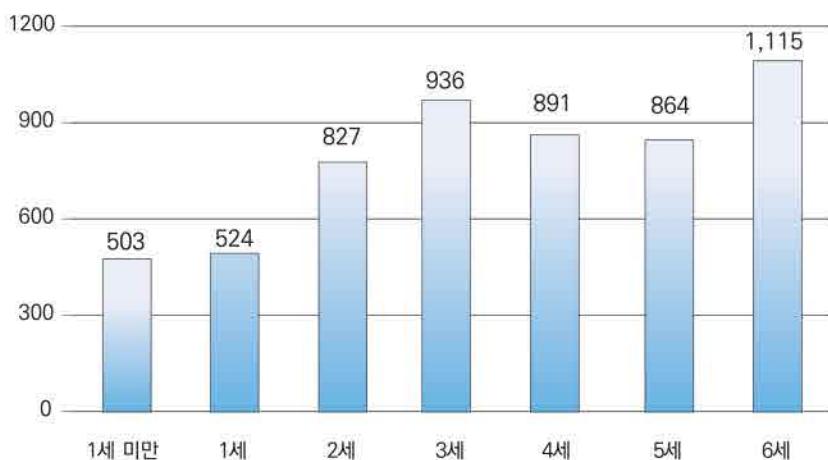
〈표 1-1〉 피해아동 연령

구분	계	1세 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건수	24,604	503	2,287	2,870	4,309	5,450	6,072	3,113
비율(%)	100.0	2.0	9.3	11.7	17.5	22.2	24.7	12.6



〔그림 1-3〕 피해아동 연령

-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학대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2세 이하의 영아보다 3~6세의 유아에서 아동학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1-4〕 만 6세 이하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 3) 아동학대 행위자와 발생장소

#### (1)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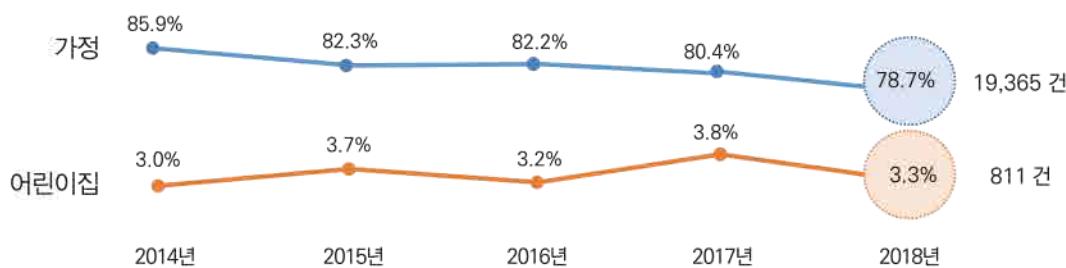
- 2018년 아동학대사례 24,604건 중 부모가 18,919건(76.9%)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자 3,906건(15.9%), 친인척 1,114건(4.5%) 순이었음
-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2,060건(8.4%)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818건(3.3%)으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는 전체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나, 어린이집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



[그림 1-5]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

#### (2) 아동학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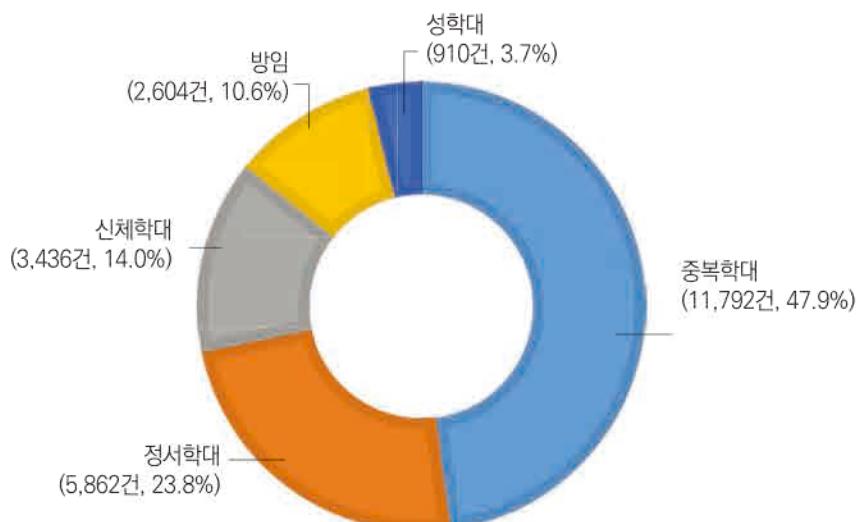
- 아동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9,365건(78.7%)으로 가장 높았음
- 어린이집 내 발생건수는 전년도 843건보다 32건이 감소한 811건(3.3%)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건수 감소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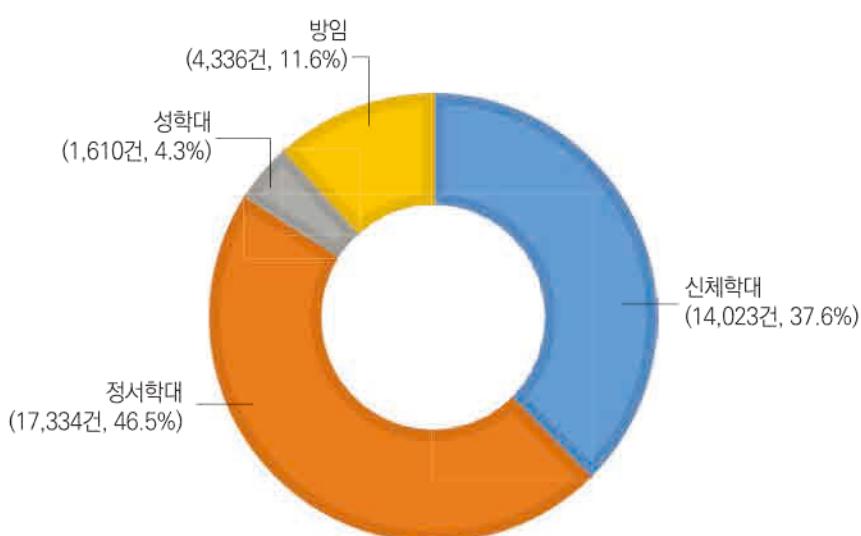
[그림 1-6]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장소

#### 4) 아동학대 발생유형

-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복학대가 11,792건(47.9%)으로 가장 높았음. 이어 정서학대 5,862건(23.8%), 신체학대 3,436건(14.0%), 방임 2,604건(10.6%), 성학대 910건(3.7%) 순으로 나타남
- 중복학대를 분류하지 않고, 학대 유형에 포함한 결과 정서학대가 46.5%로 가장 높았고, 신체학대 37.6%, 방임 11.6%, 성학대 4.3% 순이었음



[그림 1-7] 아동학대 발생유형



[그림 1-8] 아동학대 발생유형\_ 중복학대 미분류

## Ⅱ.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01

###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보육교직원의 2018년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 0.6%(213건)로 전년보다 0.4% 감소함(1.0%→0.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 제1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제6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시행령 제26조)

####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5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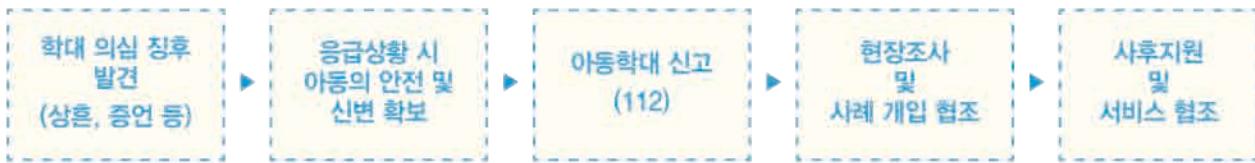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해 보호규정이 마련됨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02 아동학대 신고방법

### 1)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학대 신고절차]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 신고
  - 학대 의심 시에도 112 신고 가능(아이지킴콜 앱 112 활용 가능)
  -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 지역/ 구체적인 응급상황(아동의 안전여부, 학대의 심각성 등) 설명/ 피해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특징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 가능
- 아동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등 긴박한 상황에는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후 신고
- 아동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교사가 함께 아동 조사에 참여 가능

#### 아동학대 신고전화 예시

OO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 가능).

OO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_\_\_\_\_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은 \_\_\_\_\_입니다.

\*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상황 등

아동의 인적사항은 \_\_\_\_\_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학대행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_\_\_\_\_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신고자는 \_\_\_\_\_입니다(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 익명으로 신고 가능

\*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2) 아동학대 신고

### (1)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학대를 발견했거나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에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함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흔, 폭행으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한 경우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여름에 긴팔, 터틀넥 티 등)을 입는 경우
- 아동이 잘 씻지 않고 위생상태가 열악한 경우
- 아동이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결석하는 경우(부모와 연락되지 않음)
- 조숙한 성지식 등

### (2) 어린이집 아동 결석관리

-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는 경우,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유선이나 스마트 알림장 등 대화방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알려야 함
- 2일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함

#### (매일) 영유아 건강 · 안전 확인 및 결석 아동의 결석 사유 확인

- 부모는 유선, 스마트알림장 등 대화방법을 통해 교사와 아동의 결석 사유 공유
- 교사는 아동 결석 당일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결석 사유 확인

#### (무단결석) 2일 이상 어린이집 무단 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 가정방문은 보육교직원, 읍 · 면 · 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다면 먼저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설명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직접 아동을 상담하기보다는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고를 통하여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아동 진술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 하지 않기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 확보하기(몸의 상흔 등)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고, 신고 후 신고자와 피해 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03 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

### 1)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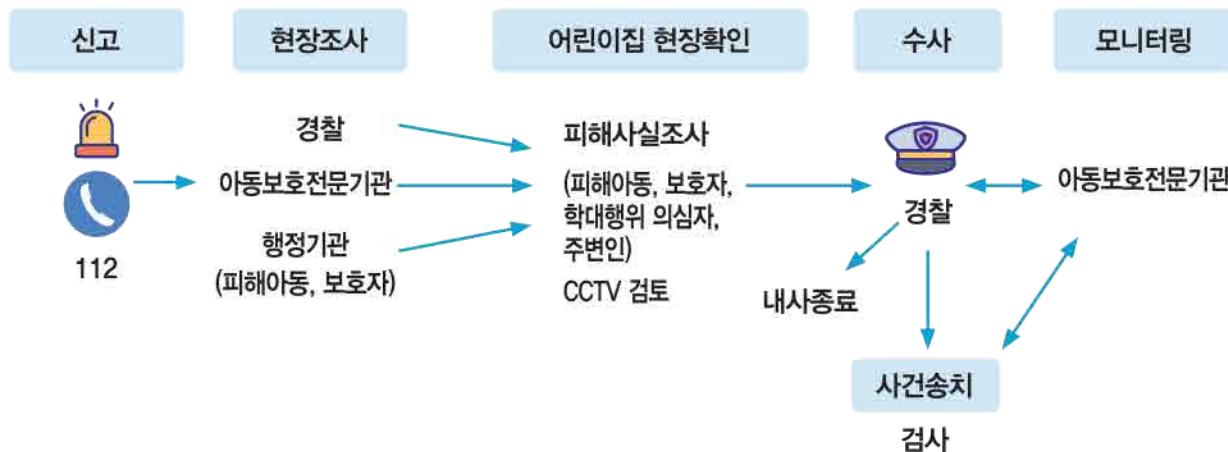
〈표 1-2〉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개입과정	역할
1.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p>〈신고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신고전화운영(112)</li> </ul> </li> <li>■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시 현장조사 실시(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 통보)</li> </ul> <p>〈현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원 2인 1조 출동(경찰 우선/동행 출동)</li> <li>■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조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li> <li>- (추가조사)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li> </ul> </li> <li>■ 아동학대혐의 판단(사법적 판단은 아니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판단)</li> </ul>
2.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p>〈피해아동 보호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조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필요시 의료기관으로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아동 보호 · 생활 지원</li> <li>-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li> </ul> </li> </ul> </li> </ul> <p>■ 보호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아동 보호위탁, 상담 및 치료위탁, 가정위탁, 친권 · 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li> </ul> </li> </ul> <p>〈학대행위자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조치: 학대행위자 범죄 행위 제지 및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li> <li>■ 임시조치: 학대행위자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 친권 · 후견인 행사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 구치소 유치</li> <li>■ 보호명령: 행위자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제한, 행위자 친권 정지</li> </ul>
3.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사건처리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li> <li>■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li> <li>■ 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li> </ul>
4.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기관으로 사례 이관</li> <li>- 재학대 발생여부 확인</li> </ul> </li> <li>■ 종결 및 사후관리</li> </ul>

## 2) 아동학대 신고 시 사건 처리과정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sup>1</sup>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함
- 현장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등을 확보하고 보호자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의심자와 원장과 교사 등 주변인을 조사함<sup>2</sup>
-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며,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 혹은 불기소 의견 송치, 혐의가 있을 시 기소의견 송치를 해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됨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사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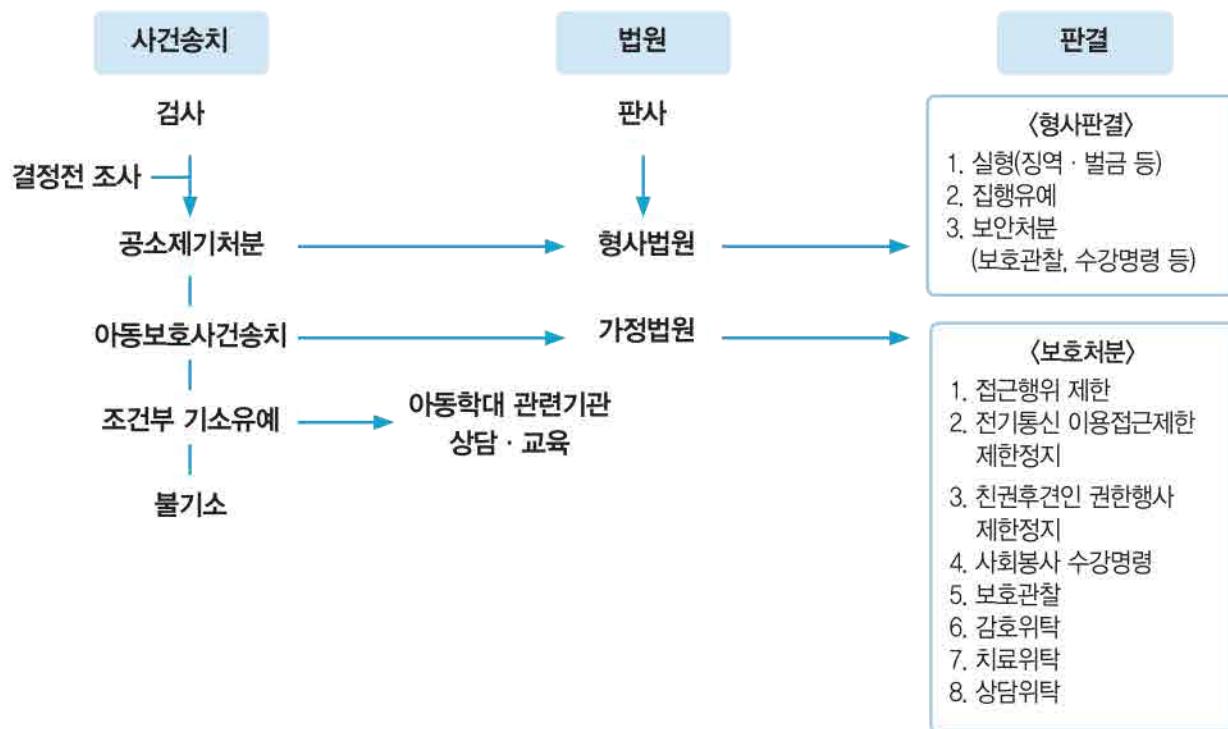


<sup>1</sup> 아동학대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은 아동학대예방과 수사활동,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며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반드시 출동하여 학대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와 아동연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PO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등 결석과 아동학대 뿐 아니라 향후 노인 장애인 학대를 총괄하는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sup>2</sup> 경찰의 경우 사복을 입고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결정 전 조사<sup>3</sup>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통해 ‘공소제기 처분’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아동학대예방 관련기관에서의 상담, 교육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만약 공소제기 처분으로 형사법원이 ‘아동학대치사’로 형사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불가), ‘학대중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상습아동학대’의 경우 벌금형없이 1/2까지 가중 처벌되며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 ·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sup>4</sup>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에 제한됨(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사례가 다수임

[아동학대 판결사례에 대한 사건 처리]



<sup>3</sup>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sup>4</sup>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19년 6월 12일 시행)에 따라 기존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10년으로 일괄적용 되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변경되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III.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 01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특성

##### 1) 피해아동 행위와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

- 보육교직원의 학대행위는 대부분 ‘밀치기, 때리기, 잡아당기기, 꿀밤, 분리하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소리 지르기, 부적절한 언어사용하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을 억압하고, 벌주고, 교직원의 말에 무조건 따르게 하려는 강압적인 행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남
- 아동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강요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먼저 인정해야 하며, 아동의 행동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함
- 보육교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행위’임

〈표 1-3〉 피해아동 행위와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sup>5]</sup>

순위	피해아동 행위	역할	
1순위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  (대집단 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장난 감을 정리하지 않음, 낮잠을 자지 않음, 상황이 명확하지 않음 등)	- 꿀밤 - 엉덩이, 얼굴, 팔, 머리, 어깨 때리기 - 얼굴을 잡고 흔들기 - 발로 밀기, 발로 차기 - 꼬집기 - (다수의 아동) 끌고 가기 - 소리 지르기 - 방치하기 -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기 - 아동이 잘 때 몸 위에 담요나 쿠션 올려두기 - 머리를 눌러 제압하다 아동의 얼굴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기	-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 - 밀쳐 넘어뜨리기 - 머리 밀치기 - 손을 꽉 잡기 - 잡아끌기 -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기 - 가두기 - 다른 반으로 보내기 - 베란다에 가두기 - 앉았다 일어났다 70회 시키기
2순위	이유 없음	- 폭언 - 머리 발로 치기 -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는 종교활동 실시하기 -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기 - 사고 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기 - 분무기로 뿌리기 - 차량에 두고 내리기 - 배달음식(자장면)으로 급식 시행하기 - 어린 영아를 방에 가두기 - 학대 행위 목격하게 하기	- 뺨 때리기 -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떨기 - 사고 시 대처하지 않기 - 밀치기 - 하루 종일 바운서에 둑어 놓기 -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 아동이 읊 때까지 때리기 - 밥, 죽, 반찬을 모두 섞어 먹이기 - 낮잠시간에 아동 방치하기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13년~2015년'까지의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제시한 것임

순위	피해아동 행위	역할	
3순위	식사 습관의 문제 (밥을 늦게 먹음, 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억지로 먹이기</li> <li>- 아동이 토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기</li> <li>- 입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기</li> <li>- 식판을 치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li> <li>-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li> <li>- 등 때리기</li> <li>- 체벌(자로 발바닥 때리기)</li> <li>- 아동의 옷에 일부러 음식을 묻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꿀밤</li> <li>- 어두운 교실에서 밥 먹이기</li> <li>- 허벅지 때리기</li> <li>- 꼬집기</li> <li>- 분리하기</li> <li>- 잡아끌기</li> <li>- 점심 늦게 제공하기, 점심 제공하지 않기</li> </ul>
4순위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함 (소리 지름, 뛰어다님, 높은 곳에 올라감, 친구와 장난침, 밖으로 나감, 울음, 교재교구를 부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꿀밤</li> <li>- 등 때리기</li> <li>- 얼굴 때리기</li> <li>- 코, 볼, 귀를 꼬집어 멍들게 하기</li> <li>- 팔을 잡고 끌고 감, 머리를 밀치기</li> <li>- 머리를 잡아당기기</li> <li>- 물기</li> <li>- 장시간 분리하기</li> <li>- 방치하기</li> <li>- 아동 얼굴에 의료용 테이프로 공갈 젖꼭지를 붙이기</li> <li>- 부적절한 언어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엉덩이 때리기</li> <li>- 머리 때리기</li> <li>- 꼬집기</li> <li>- 손바닥을 손톱으로 누르기</li> <li>- 세게 훔들기</li> <li>- 장시간 교실에서 제자리 뛰기 시키기</li> <li>- 장시간 무시하기</li> <li>- 한자리에서 생각하기(타임아웃)</li> <li>-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두기</li> <li>- 판셋으로 찌르기</li> </ul>
5순위	친구와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한 문제행동 따라하기(깨물기, 얼굴 때리기)</li> <li>- 손, 엉덩이, 입, 머리 때리기</li> <li>- 바닥에 세게 내려놓기</li> <li>- 아동의 발을 잡고 끌고 나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리 지르기</li> <li>- 뒤통수 잡아끌기</li> <li>- 세게 밀치기</li> </ul>
6순위	실수를 함 (용변, 컵의 물 쏟음, 음식 흘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치기</li> <li>- 흘린 음식 다시 먹이기</li> <li>-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엉덩이 때리기</li> <li>- 방치하기</li> </ul>

\* 출처: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 2)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

- 보육교직원이 식사지도를 위해 억지로 먹이고, 훈육을 평계로 가혹한 행동을 하거나, 대집단 활동 수행을 잘 못하는 아동을 벌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등 아동의 안전에 무심한 것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에 배치되는 행위임

〈표 1-4〉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

순위	행위특성	내용
1순위	온정적이지 않은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울고 있는데 달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치함</li> <li>-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할 때 아동을 무시하거나 방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기저귀를 간 후 바지를 입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자, 아동의 바지를 입히지 않고 30분 이상 방치함</li> </ul> </li> <li>- 부적절한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는 아동에게 “시끄러워, 울지마”라고 말함</li> </ul> </li> </ul>
2순위	식사지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지 못하는 반찬을 억지로 먹임</li> <li>- 토한 것을 다시 먹임/ 토한 것을 아동에게 치우도록 지시함</li> <li>- 밥을 늦게 먹는 아동을 어두운 곳으로 분리시켜 밥을 먹임</li> <li>- 식사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li> <li>-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음</li> <li>- 특별활동 시간에 맞추기 위해 빨리 식사 지도를 함</li> </ul>
3순위	체벌과 가혹한 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대로 인식하지 않음</li> <li>- 손을 잡고 이야기 하는 것, 아동을 다른 장소로 분리하는 것, 다른 공간에 가두는 것, 아동을 끌고 가는 것, 장시간 분리하는 것(타임아웃) 등을 훈육으로 인식함</li> </ul>
4순위	대집단 운영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집단 시 교사의 다리를 만지는 아동을 힘으로 제압함</li> <li>- 울동을 반대로 하거나 따라하지 못한다고 때림</li> <li>-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편지를 쓰지 못한다고 방치함</li> <li>- 재롱잔치를 준비하며 따라하지 못하는 아동을 때리거나 밀침</li> <li>- 활동을 다 하지 못한 아동을 다른 반 교사에게 훈육을 보냄</li> </ul>
5순위	아동보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 본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음</li> <li>- 머리를 세게 딸음</li> <li>- 너무 세게 이를 낚아줌</li> <li>- 세면 시 아동의 얼굴이 뒤로 넘어가는 강도로 낚아 줌</li> </ul>
6순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상황에서 때린 아동을 똑같이 때림</li> <li>-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동에게 화가 나 때리거나 밀침</li> </ul>
7순위	안전사고 대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치료 강행함</li> <li>- 사고 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동을 귀가시킴</li> <li>- 사고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li> </ul>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 3) 어린이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 행위’가 잘못된 훈육행동이라는 인식 없이 반복되거나 심화될 때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 ‘child abuse’나 ‘maltreatment’ 모두 아동학대라는 의미로 해석하나 ‘maltreatment’은 ‘child abuse’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적절 행위’ 혹은 ‘부당 행위’로 번역되기도 함
- 어린이집 관리자는 평소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지도가 부적절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행위에 부적절한 소지가 없는지 자기검토 해야 함
- 최근 OCED국가에서는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영유아기관)의 종사자가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신임종사자 오리엔테이션, 관리자의 모니터링, 종사자 재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음

〈표 1-5〉 보육교직원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의 예<sup>6</sup>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신체나 도구(자 등)로 영유아를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영유아를 향해 물건 등의 물체를 던지지 않는다. 강압적으로 아동을 끌어당기거나 앓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영유아 훈육 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훈육 시 화장실이나 교구·교재실 등에 아이를 혼자 있도록 하지 않는다. 지도 시에 영아의 손목 및 어깨 등 신체 부위에 강한 압력을 주지 않는다. 영유아가 그대로 당해 보게 하는 보복성 행동을 하지 않는다(너도 괴롭혀 볼래?). cctv 사각지대로 영유아를 데리고 가서 훈육을 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기본생활요구 지원 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오염된 기저귀, 젖은 옷 등 영유아의 기본생활요구를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를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의사표현(울 때, 아플 때 등) 및 요구를 모른 척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영유아 존중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껴도 절대 이를 영유아에게 나타내지 않는다. 영유아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 채 교사의 기분, 감정으로 다그치지 않는다. 영유아의 이름이 아닌 “애, 야, 너”라는 호칭을 삼간다. 영유아를 비교하며 조롱하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지 않는다.

\* 출처: 이완정(2018).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당행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p.97). 한국아동권리학회.

6 이 목록은 이완정(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이는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에 의해 직접 도출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도출하기 위해 첫째, 국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초점집단 예비조사를 거쳐 목록을 구성하였으며,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에 문항별로 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무게 값에 따른 순서대로 최종 목록을 도출하였다.

## 0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sup>7</sup>

- 아동학대 판결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인 보육교사는 주로 신체와 정서학대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복지법」 제74조에는 원장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신의 주의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양벌규정<sup>8</sup>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피해아동의 학대 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동이 받는 정서적 어려움도 정서학대로 판결하고 있음

판례 1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원장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폭행, 신체학대, 정서학대	판결	징역 2년,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b>◆ 학대피해 아동 행위</b>					
① 울동을 따라하지 못함 (아동 3명) ② 점심을 늦게까지 먹고 김치를 먹지 않음 ③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아동 13명					
<b>◆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동 시 아동이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주저앉힘 “울동하는 것을 보지 말라” 하면서 반대쪽으로 보고 있으라고 지시함</li> <li>• 식판에 남겨놓은 김치를 숟가락으로 모아 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었으나, 아동이 손을 입으로 가져가 뱉어내려 하자 원손으로 아동의 팔을 6회 세게 잡아당기듯이 쳐내고, 식판의 남은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음 아동이 토해내자 화가나 손으로 아동의 원쪽 뺨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함. 아동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바닥으로 기어와 손으로 토사물을 집어먹게 함</li> <li>• 다른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함</li> </ul>					
<b>◆ 양형이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아동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불안해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진단 됨</li> <li>• 교사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함</li> <li>•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의 범죄경력이 있음</li> </ul>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	판결	벌금 500만원
<b>◆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행위자가 아동들에게 큰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 아동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함</li> </ul>					
<b>◆ 양형이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아동들에 대한 중한 범죄가 발생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li> </ul>					

7 이 제시된 판결 사례는 법원의 형사판결과 보호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2014년 12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요약한 「아동학대 판례 100선」(2016년) 중에서 판결문 원본까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8 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범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범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범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범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판례 2 교사가 초범인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대피해 아동 행위</b> : 울면서 고집 부림</li> <li>◆ <b>보육교직원 학대 행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4대 때리고 아동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한쪽 구석으로 들어 옮긴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주저앉은 아동이 발을 동동거리며 울자 아동의 다리부위를 수차례 차고, 약 30분 가량 나오지 못하게 함</li> </ul> </li> <li>◆ <b>양형이유</b>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함</li> </ul>					

## 판례 3 보육교사가 딸과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형의 선고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대피해 아동 행위</b> : 아동이 예쁘고 통통하다는 것 말고 이유 없음,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침</li> <li>◆ <b>보육교직원 학대 행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양쪽 팔을 입으로 물어 멍들게 함</li> <li>• 아동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꼬집어 멍들게 함</li> </ul> </li> <li>◆ <b>양형이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li> <li>• 딸과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함</li> </ul> </li> </ul>					

## 판례 4 보육교사와 원장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정서학대	판결	징역 1년 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대피해 아동 행위</b> : 잠을 자지 않음, 알 수 없음</li> <li>◆ <b>보육교직원 학대 행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운서에 눕혀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릴 정도로 바운서를 세게 흔들어 신체적으로 학대함</li> <li>• 바운서에 아동을 묶은 뒤 분유병을 물린 채 2시간 정도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놓아둠</li> <li>•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아동의 몸을 잡아끌며 신체적으로 학대함</li> </ul> </li> <li>◆ <b>양형이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현저히 결여한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li> <li>•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li> </ul> </li> </ul>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대피해 아동 행위</b> : 낮잠을 자지 않음</li> <li>◆ <b>보육교직원 학대 행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음</li> <li>• 아동을 바운서에 묶는 것을 도와주고 아동에게 분유병을 물린 뒤 방에서 나가 교사가 불이 꺼진 방에 약 1시간 동안 아동을 방치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함</li> </ul> </li> <li>◆ <b>양형이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방지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까지 나아갔고, 그 양태도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참작함</li> </ul> </li> </ul>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 03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 1)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 어린이집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5~49조에 이르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자격취소, 어린이집의 폐쇄와 위반사실 공표 등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

〈표 1-6〉 아동학대 관련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

구분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

\*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사업안내.

## 2) 위반사실의 공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을 통해 위반시설과 위반행위자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를 함
- 위반시설: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 위반행위자: 본인 이름, 법 위반 이력,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의 공표']

The screenshot shows the Childcare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Integration Disclosure', 'Violation Fact Disclosure', 'Reporting', 'Childcare Disclosure API', and 'Reporting Disclosure API'. Below this, there are two main sections:

- Violation Fact Disclosure**: This section shows a facility named '어린이집 A' with a disclosure date of '2020-01-15'. It includes dropdown menus for 'Facility Type' (선풍기), 'Addres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nd 'Disciplinary Measure' (Warning).
- Violation Behavior Discloser**: This section shows a staff member named '보육교사 B' with a disclosure date of '2020-01-14'. It also includes dropdown menus for 'Facility Type' (선풍기), 'Addres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nd 'Disciplinary Measure' (Warning).

# IV.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 01 정신건강의 이해

### 1) 정신건강이란?

- 정신건강은 심리적 안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용인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하여 사회에 적응된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히 잘 지내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함. 즉, 건강을 단순히 병이 없는 질병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생존에 직결된 부분부터 삶의 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관점으로 보고 있음

### 2)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 연령, 성차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인 갈등과 우울증 등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요인, 가족의 문제,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 뇌조직의 손상을 가져오는 사고나 질환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 전 생애 발달적 관점으로 볼 때 영유아기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로 자신의 연령에서 기대되는 발달과업을 적절히 성취하여 수행하지 못했을 때 심리적·행동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됨
- 최근 우리 사회의 영유아기 양육 방식은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펴서 지원하기보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양육환경은 영유아의 개별적인 욕구와 준비정도, 능력에 맞춰 발달과업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가 어려워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3)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진단

- 개인의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2015): 이하 DSM-5’ 기준은 장애범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의 임상적 진단에 활용되어져 왔음
-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DSM-5의 정신장애 범주에 대한 선별질문이 포함된 진단면담과 세부적인 증상에 대한 체크리스트, 심리검사 등이 활용됨
- DSM-5의 정신장애 범주 중 영유아기에 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문제
  - 신경발달 장애: 자폐스펙트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택장애 등
  - 우울·불안 장애: 주요우울장애, 분리불안 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
  - 급식 및 섭식 장애: 이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등
  - 배설장애: 유뇨증과 유분증 등
  - 기타: 적대적 반항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스마트폰 중독(인터넷 중독) 등

## 02 어린이집의 물리적 · 인적 환경과 정신건강

### 1) 어린이집의 환경과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

- 어린이집은 개별적인 가정 양육과는 상반된 집단 보육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지내기 위해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지는 사회적인 기관임
-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과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 아동들이 집단적 보육의 형태로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 어린이집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여 생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
- 어린이집의 물리적 · 인적 환경은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또래와 교사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2) 어린이집 환경에서 교사 정신건강의 중요성

-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성인은 교사이며, 교사의 정신건강은 영유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교사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우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등은 영유아의 정서에 직 ·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은 간과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어린이집 환경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교사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 것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라 할 수 있음
-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교사의 정신건강이 유지되지 않으면 교사는 개인적으로나 영유아 및 부모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되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됨
- 교사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면서, 교사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어린이집 환경에서 영유아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03 영유아 · 교사 정신건강의 실제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1)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 마음 들어주기'

선생님은 영유아의 마음을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영유아를 위한 일이었는지, 영유아를 존중하는 마음이었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상황 1]

“예쁘게 앉은 친구들 먼저 손 씻고 올 거예요.”



[상황 2]

“빨리 밥 먹은 친구들은 바깥놀이 먼저 나갈 거예요.”



#### 생각해 봅시다.

- ① 예쁘게 앉는 것과 손을 씻는 것, 빨리 밥을 먹는 것과 바깥놀이를 나가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②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혹시 교사 중심으로 반을 운영하고자 한 말은 아니었는지 아동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 사례 ① 울면서 등원하는 아동



### [교사의 고민]

“아침마다 울면서 등원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우는 아이만 달래줄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 (1) 아동이 울면서 등원하는 이유에 따른 지원

<b>[심리적인 요인]</b> 오랜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부모와 떨어지는 게 불안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li> <li>■ 아동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와~ 지민이 왔네. 보고 싶었어 지민아~”              “우리 지민이가 오랜만에 와서 그려는구나. 선생님한테 올래?”           </div> </li> </ul>
<b>[신체기능적인 요인]</b> 졸리거나 몸이 아픈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졸리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울 수 있음을 인정하기</li> <li>■ 등원 시 아동의 컨디션을 부모와 함께 확인하고 아동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마련하기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지민아, 졸리니? 여기서 잠깐 쉬어볼까?”           </div> </li> </ul>
<b>[환경적인 요인]</b> 가정환경의 변화나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출장, 입원 등으로 부모를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 또래관계 갈등상황 등 환경적인 요인도 아동이 등원거부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li> <li>■ 가정환경, 어린이집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아동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오늘 지민이가 엄마와 함께 있고 싶구나.”              “어제 친구랑 속상했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div> </li> </ul>

## (2) 우리 반 상황에 따른 지원

### 많은 아동이 등원하였고, 간식 준비 등으로 분주한 경우

- 많은 아동이 이미 등원한 상태이고, 간식 준비 등으로 분주한 경우에는 원장님이나 보조선생님 등 어린이집의 다른 성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 오랜만에 등원한 아동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과 함께 방법 찾아보기

“원장님, 잠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지민이가 많이 울어서 달래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 (3) 부모의 도움 여부에 따른 지원

### 아동의 부모가 잠시 도와줄 수 있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잠시 도와줄 수 있는 경우라면 부모가 잠시 어린이집에 머물 수 있도록 협조하기

(교사) “지민 어머님, 지민이가 많이 우는데 조금 달래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모) “네, 제가 잠시 시간 되니 지민이랑 함께 있을게요.”

### 영유아 등원 지도 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① 어린이집에 적응한 아동이라도 어린이집에 오기 싫은 날이 있음을 이해해주세요.
- ② 영아의 분리불안은 발달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특성을 이해해주세요.
- ③ 우는 아동을 방치하는 것은 자칫 정서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보육실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성인, 부모 등에 지원 요청해 보세요)

## 사례 ② 놀잇감 때문에 다투는 아동



### [교사의 고민]

“놀잇감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꼭 같은 놀잇감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일이 많아요. 특히 쌍기영역에서는 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 (1) 아동이 놀잇감 때문에 다투는 이유에 따른 지원

새로운 놀잇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놀잇감은 아동 누구나 가지고 놀이하고 싶다는 마음 알아주기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오늘 기찻길 블록이 처음 보여서 지호가 놀고 싶었구나.”           </div> </li> </ul>
친구와 놀고 싶어서 놀잇감을 빼앗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기에는 친구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여 반대로 놀잇감을 빼앗으며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끼리 놀잇감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을 잘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지원해 주기</li> <li>▪ 친구와 함께 놀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아동과 이야기 나누기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지호야~ 슬기가 놀던 기찻길 블록을 왜 가져갔니?”              “지호가 슬기와 놀고 싶었구나.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div> </li> </ul>
놀잇감을 서로 갖고 싶어서 다투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력적인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은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며,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다투고 있다면 잠시 떨어지게 한 후) 슬기야, 지호야, 둘이 왜 싸우고 있었니?”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div> </li> </ul>

## (2) 우리 반 놀이환경 상황에 따른 지원

### 전체적으로 놀잇감이 부족한 경우

- 놀이 관찰을 통해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놀잇감을 알아보고 적절한 지원 방법 찾아보기
- 무조건 많은 놀잇감을 제시하는 것보다 놀이 관찰을 통해 필요한 놀이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놀이를 더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지원하기

“우리 반 아이들은 기차놀이를 좋아하네. 기찻길 블록이 더 필요하겠어.”

## (3) 어린이집 상황에 따른 지원

### 다른 반과 협조할 수 있는 경우

- 특정 놀잇감이 필요한데 우리 반에 없는 경우, 어린이집 전체 놀이자료를 공유하며 동료교사에게 협조 구하기
- 평소에 어린이집 놀이자료 상황을 점검하고 놀잇감 구입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기

“혹시 하늘반에는 기찻길 블록이 더 있을까요? 우리 반 아이들이 기차놀이를 좋아해서요.”

### 놀이지원 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❶ 놀이는 어린이집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적절한 지원을 위한 교사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❷ 놀이 중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아이들끼리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두 아이의 입장을 모두 말하게 하며 특히 억울하거나 속상한 아이가 없도록 해요).
- ❸ 영유아의 다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자칫 잡아당기기라도 하면 신체학대가 되기도 하고, 타임아웃 같은 행동지도 방법도 시간이 길어지면 정서학대가 될 수 있어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이들에게 어린이집과 선생님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사례 ③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동



#### [교사의 고민]

"활동 시간이면 꼭 장난을 치는 아이가 있어요.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야기나 누기 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 (1) 아동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에 따른 지원

아동이 활동주제에 흥미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에 따라서는 기질적으로 활동 자체에 흥미가 없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음. 아동이 활동 주제에 흥미가 없다면 활동 내용과 방법 바꾸어 진행해 보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안전교육놀이 해볼까?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까?"</p> </div>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에 따라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거나,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음. 늘 같은 아이들에게만 이야기 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지, 배제되는 아이들은 없는지 살펴보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민수) '나도 말하고 싶은데...' (교사) "우리 이번에는 민수가 이야기해 볼까?"</p> </div>
상상력이 풍부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동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에게 이야기 할 기회 제공하기</li> <li>엉뚱한 말을 하거나 황당한 질문을 하는 아동 중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의 아동이 있음을 이해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민수의 생각이 재미있네. 우리 다 같이 들어볼까?"</p> </div>

## (2) 우리 반 상황에 따른 지원

### 전반적으로 활동에 흥미가 없는 경우

-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활동에 흥미가 없다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 내용과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 활동내용과 방법을 전환하기

(교사) “바다반 친구들~ 교통안전활동을 역할놀이로 바꾸어 볼까?”

(아동) “네, 자동차놀이해요.”

(아동) “전 운전사 할래요.”

## (3) 활동방법 변경하기

### 활동 변경하기

- 대·소집단활동이라고 반드시 교사 주도일 필요가 없으며, 매일 진행하지 않아도 됨을 이해하기
-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은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 영유아중심의 놀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전체 놀이상황을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기

(교사) “여기 교통안전 관련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자동차와 같은 놀잇감도 있단다.  
이것으로 어떤 활동을 해 볼까?”

(아동) “선생님~ 교통안전 영상봐요.”

(아동) “우리가 똑같이 따라 해 봐요.”

### 활동 진행 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① 활동은 전체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므로 활동의 흐름이 끊어져서 다른 아동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② 아동의 성향에 따라 관심받고 싶어 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음으로 활동내용을 고려하면서도 개별 아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③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아동하고만 활동을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④ 활동을 교사가 계획한대로 빨리 진행하다보면 다소 산만하거나 관심을 끌려는 아동에게 화를 내어 정서학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이 없도록 무리하게 활동을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사례 ④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아동



### [교사의 고민]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거나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먹지 않는다고 그대로 두면 배고플 것 같고, 다른 아이들도 안 먹는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 (1)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 이유에 따른 지원

아동의 섭취 음식 양이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도 먹는 양이 다르듯이 아동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차이가 날 수 있음. 아동이 섭취할 수 있는 적당량을 주고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주의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p>(교사) “슬기야, 왜 밥을 남겼어?”            (아동) “밥이 너무 많아요.”            (교사) “그래~ 슬기에게 밥을 너무 많이 줬네.”</p> </div>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음식을 먹고 체한 경험이나 음식의 식감, 향, 맛 등을 싫어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지 않도록 하기. 특히 알레르기 음식 여부 꼭 확인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p>“슬기가 시금치를 먹고 배가 많이 아팠구나. 그럼 우리 다른 반찬 먹어볼까?”</p> </div>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소에 음식을 잘 먹던 아동이라도 몸이 좋지 않으면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거나 식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 아동의 컨디션에 따라 식사지도의 방법 바꾸어보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p>“슬기가 밥을 조금 밖에 못 먹었네.”            “슬기가 오늘 밥 먹기 힘들구나. 그만 먹을까?”</p> </div>

## (2) 우리 반 상황에 따른 지원

### 대부분의 아동은 잘 먹지만 소수의 아동이 편식하는 경우

- 다른 아동과 비교하며 식습관 지도를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개별 아동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지원하기

“슬기가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고기만 먹으면 응가도 잘 안 나오고 배도 아플 수 있어.”  
“오늘은 시금치를 조금만 먹어볼까? 와~ 슬기가 시금치를 먹었네.”

## (3) 부모의 요구에 따른 지원

### 부모가 음식을 골고루 먹이길 원하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관심이 많은 경우

-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습관 지도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음을 부모에게 안내하기
- 부모가 음식을 골고루 먹이길 원하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관심이 많은 경우라면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모와 함께 지원하기

### 알림장 등 원아수첩에 기록 note

“슬기 어머님, 오늘 슬기가 점심시간에 시금치를 조금 먹었습니다. 꼭 칭찬해 주세요.  
또한 아직은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집에서도 먹어볼 기회를 주세요.  
슬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에 함께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동 식습관지도 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누구나 선호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편식 지도를 위해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하세요.
-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혼자 먹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 사례 ⑤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



### [교사의 고민]

“낮잠 시간에 자지 않으려고 하는 아동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는 아동을 놀이하게 하면 다른 아동들도 모두 낮잠을 자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어 걱정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 (1)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 이유에 따른 지원

어린이집 낮잠 환경이 낯선 아동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친구들과 낮잠을 자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기</li> <li>■ 애착 인형을 활용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교사가 옆에서 토닥거리며 잠을 재워주는 등 영유아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원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서윤아~ 여기 서윤이 이불이 있네. 인형도 있고. (토닥거리며) 자장 자장.”         </div>
낮잠을 자서 잠이 오지 않는 아동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잠을 잘 자던 아동이라도 때로는 늦잠을 자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기</li> <li>■ 무조건 재우기보다는 아동의 수면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한 놀이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아동) “선생님~ 잠이 안 와요.”            (교사) “서윤이가 오늘은 잠이 안 오는구나. 그럼 친구들 자니까 조용히 그림을 그려볼까?”         </div>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따라 수면 욕구가 높지 않아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기</li> <li>■ 잠이 오지 않는 아동을 계속 누워있게 하지 않으며, 다른 반과 협조하여 조용히 놀이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해 주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교사) “서윤이는 집에서도 낮잠을 자지 않니?”            (아동) “네~ 잠이 안 와서 안자요.”         </div>

## (2) 우리 반 상황에 따른 지원

### 전반적으로 아동이 낮잠을 못 자는 경우

-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낮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보육실의 낮잠 환경 점검해 보기  
커튼을 내려 교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자장가 등 음악을 틀어주며 소음을 차단하였는지 등 환경 체크해 보기
- 오전에 대근육 놀이나 활동을 계획하는 등 일과운영 점검해 보기

‘오전에 바깥놀이를 계획해볼까?’  
 ‘대근육 신체활동하며 에너지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3) 어린이집 상황에 따른 지원

### 낮잠 시간에 공동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 교사들이 공동 업무를 해야 할 때도 보육실을 비워서는 안 되는 점 기억하기
- 사전에 공동 업무 장소가 정해졌다며 아동들이 낮잠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환경 고려해 주기  
간혹 교사들 간 말소리가 아동의 낮잠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기

### 낮잠 시간 동안 교사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경우

- 낮잠 시간에 교사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 있는 성인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  
어린이집 내 다른 성인(원장, 보조교사)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반과 협조하여 통합반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음을 고려하기

### 어린이집 낮잠 시간,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❶ 낮잠은 아동의 건강상태와 전날의 숙면 여부, 잠잘 때 습관 등 개별적인 성향을 파악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 ❷ 잠을 재울 때와 깨울 때 모두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해주세요.
- ❸ 낮잠을 재우기 위해 육박지르거나, 무조건 누워있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 2)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나의 마음 마주하기'

###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반 아이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니 “선생님! 뭐 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닿아 맺혔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속상해집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로 떠들썩하던 다음 날,

“CCTV 좀 보여주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많다는데...”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 하나에 마치 아동학대 범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속상한데...

부모님의 신뢰받지 못한 눈빛에도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고 웃어야 하는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 ① 그냥 화가 나오!



### [교사의 고민]

“요즘, 아이들이 울고 떼쓰는 소리, 싸우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출근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아요.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뜻해요.
- 분노, 우울, 무력감, 소진 등의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므로 직무 스트레스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 ① 과다한 업무에 시간이 부족할 때
- ② 직무수행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 ③ 보육교사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 ④ 업무 자율성이 부족하거나, 업무환경이 불안정할 때

## ② 교사의 감정조절 지원 방법을 찾아 보세요.

- 영유아의 울음소리, 떼쓰는 소리, 싸우는 소리 등에 갑자기 ‘화’가 난다면?
  - 일단 화가 나는 상황을 피해요.
  - 어린이집의 다른 성인(원장 · 동료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 분노 감정이 자주 일어난다면?
  - 스트레스 요인을 알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 해보세요.
  - 취미생활, 운동, 명상 등 개인적인 충전시간을 가져보세요.

## 번아웃 증후군(Burn out)

번아웃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뜻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임.  
다른 말로 '소진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함

### ➊ 번아웃 증후군의 경고 증상

-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는 느낌이 든다.
- 쉽게 짜증이 나며 화가 치민다.
- 직무에 대한 거부감과 자기혐오감이 든다.
- 감정의 소진이 심하여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힘들다.

### 사례 ② 할 일이 많아요.



### [교사의 고민]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반 운영을 하고 싶지만, 어린이집 행사에 서류 작성, 환경구성, 대청소 등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저 혼자 책임져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효율적인 어린이집 업무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 • 업무의 양, 소요시간, 중요도를 파악해요.

- 우리 반 업무&공동업무, 업무의 중요도와 양에 따른 소요시간을 체크해요.
- 매일 동일한 업무라면, 업무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업무를 함께 처리하여 시간을 절약해요.

-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 업무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요.
  - 공동업무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요.
- 하루 전날, 또는 아침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미리 체크해 주세요.
  - 매일 할 일을 체크하고, 꼭 기억해야 할 업무는 메모하여 보육실에 게시해요.
  - 보육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영유아 보육’임을 상기해요.

## ② 보육교직원 간 협력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세요.

- 교사회의를 통해 업무분장하기
  - 민주적인 교사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업무분장을 실시해요.
- 업무분장 시, 교사 경력 및 적성, 다양한 능력 등을 고려해요.
  - 업무분장을 할 때는 현 보육교사의 기존 업무량(반 원아 상황 등), 경력, 개별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요.
- 업무분장은 유연하며 언제든지 변경 가능
  - 업무분장 이후, 어린이집 및 교사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 체크 포인트

- ➊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중요한 것은 ‘영유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 있다면 우선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 ➋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서류나 행사 등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은지, 업무분장 전 사전 체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세요.

### 사례 ③ 부모와의 소통이 힘들어요.



#### [교사의 고민]

“요즘은 아이들보다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한 명의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어떤 부모님은 낮잠을 꼭 재워 달라 하시고, 또 다른 부모님은 낮잠을 재우지 말라 하시고요. 작은 상처에도 선생님은 뭐 하셨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부모와 원만한 관계 맺는 방법

-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와 신뢰감 형성

- 영유아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 상황 모면을 위한 대처는 부모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어요.

**(교사)** “하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진이 팔에 멍이 들어 있네요. 바깥놀이터에서 다친 것 같은데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부모)** “아니에요. 영진이가 다쳐서 속상하지만 선생님께서 상황을 알려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 보육교사와 부모의 양방향 의사소통

- 개별수첩, 전화, 등·하원 상담 등의 비정기적 상담 등을 활용하여 양방향 의사소통을 해주세요.
- 연 2회 정기 부모상담 시에는 영유아 관찰기록 등을 바탕으로 보육전문가로서 상담을 해주세요.

-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부모참여 기회 제공

- 부모참관, 부모교육, 부모참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부모참여를 독려해 주세요.

#### 체크 포인트

- 교사와 부모는 서로 협력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관계예요.
-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불안감, 기대감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참고문헌**

- 경기 Wifi(2018).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제 5-1호).
-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김아름, 박은영, 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선권(2018).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NARS현안분석 vol.4. 국회입법 조사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우현경(2017). 어린이집에 다니는 3~4세 유아의 또래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완정(2018).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당행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p.97).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혜란, 김진이, 김소연(2017). 아동과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 서울:학지사.
- 전병주, 최은영(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p. 119-15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new/](http://www.korea1391.go.kr/new/))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9).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 온라인 영상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Hilt, R. J. & Nussbaum, A. M.(2016). DSM-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가이드북(DSM-5 Pocket Guide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강진령 역(2018). 서울:학지사.

PART

**02**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아동 성폭력 · 실종 예방

I . 아동 성폭력 예방

II . 아동 실종 예방

# I. 아동 성폭력 예방

## 01 아동 성폭력의 정의

### 1) 법률적 관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만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2) 임상심리학적 관점

-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의미함
-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인인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음

## 3)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

-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된 것을 의미함

## 4) 성폭력의 예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 등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는 행동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이나 놀리는 행동
- 야한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행동
- 아동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행동을 함께 하는 것

-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가 모두 해당됨.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음

## 02 아동 성폭력 현황

### 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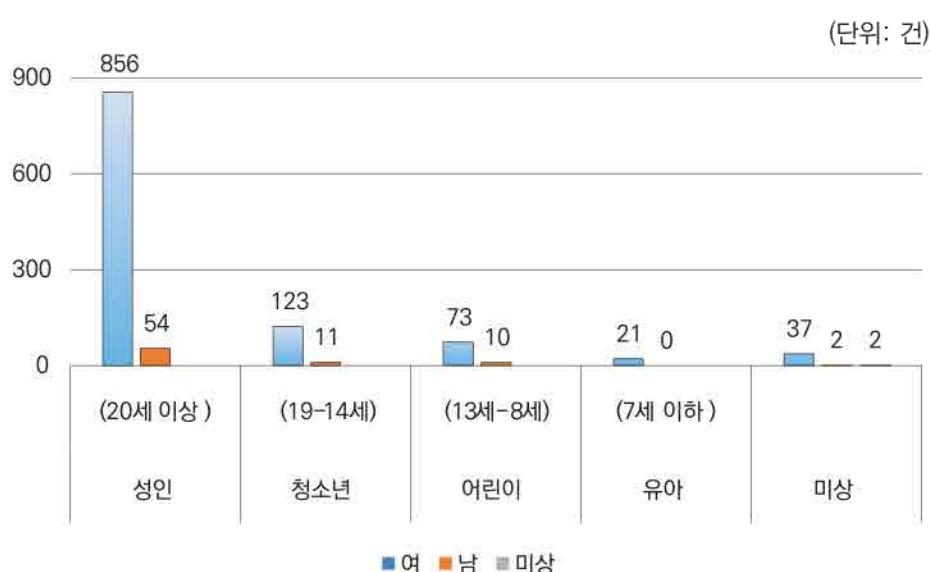
-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전체건수 1,189건 중 1,110건(93.3%)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연령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피해자가 910건(76.5%)으로 가장 높으며, 청소년피해자(19세~14세)가 134건(11.2%), 어린이피해자(13~8세)가 83건(7.0%), 유아피해자(7세 이하)가 21건(1.8%)로 나타남

〈표 2-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계
여	856 (72.0)	123 (10.3)	73 (6.2)	21 (1.8)	37 (3.1)	1,110 (93.4)
남	54 (4.5)	11 (0.9)	10 (0.8)	-	2 (0.2)	77 (6.4)
미상	-	-	-	-	2 (0.2)	2 (0.2)
계	910 (76.5)	134 (11.2)	83 (7.0)	21 (1.8)	41 (3.5)	1,189 (100.0)

\* 출처: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그림 2-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 2) 영유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1,189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29건(8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유아의 경우에는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13건(61.9%)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전체 21건 중 20건으로 95.2%를 차지하였음

〈표 2-2〉 영유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구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계			
	친·인척		동네사람	유치원/학원						
	친족	친족의 인척								
영유아 (7세 이하)	6 (28.6)	7 (33.3)	4 (19.0)	3 (14.3)	-	1 (4.8)	21 (100.0)			

\* 출처: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 0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 1)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 아동에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접촉에도 기분 좋은 접촉과 기분 나쁜 접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게 함
-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라고 알려주고, 반대로 아동 스스로도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알려줌
- 그림이나 사진자료, 인형 등을 통해 신체구조와 차이,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어른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때로는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음을 알려 줌
-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함

## 2) 아동간 성폭력 예방

-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런 행동이 아닌 보통의 아동들보다 과도하게 성적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교육과 조치가 필요함
- 만3세~5세 어린 아동이라도 성적 호기심이 높아지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상호적이라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음
- 아동이 문제행동, 과잉행동 등을 하였을 시 그 행동 원인을 살펴봐야 함
  - 성행위에 노출됐을 가능성
  - 애착의 결핍 가능성
  - 인터넷문화 특히 만화, 영상(스마트폰) 등은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음(모방범죄)
- 아동은 자신의 행동이 '성적괴롭힘'이라는 인식은 없을 수도 있으나, 나쁜행동이라는 인식들은 대부분 갖고 있음("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마")
- 타인의 성적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줌 – 동의개념
  - 상대방이 싫으면 포옹도 해서는 안 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위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함

## 3) 주의사항

- 아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함
- 과도하게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의시키거나 관심을 끌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아동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해주며, 문제발생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과 따뜻한 포옹 등도 중요함
- 아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원함
- 어른들의 눈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육공간에서 문제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함

## 아동의 특징

**① 아동은 힘이 없다.**

**② 아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안전과 성교육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이러한 취약성은 더 커질 수 있다.

**③ 아동은 모든 성인을 믿는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8세 이하의 어린이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든 성인을 잘 믿는다. 심지어 근친강간이나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있다할지라도 아동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④ 아동은 성인의 동기나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동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하기 위해 강제, 속임수, 위협, 물질공세, 갈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grooming이란 가해자가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가해자는 아동과 자주 마주치기,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주기 등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할 때 아동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Piaget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하면 특히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외모나 태도 또는 나타난 행동의 결과로 선악을 판단한다고 한다.

**⑤ 아동은 성폭력을 애정표현이나 애정의 증거로 오해하기도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성폭력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보통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해자들은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뒤 “너를 예뻐해 준거야”, “사랑해서~”라고 아이를 속이기도 한다.

## 04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1)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지 않기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한숨 쉬는 행동 등을 표현할 경우 아동은 자신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잘못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 약단치지 않기

“왜 조심하지 않았나?”, “왜 도망가지 않았어?”라는 말은 아동에 대한 질책이 될 수 있으며, 아동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독여 줌

#### ■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기

어른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덤덤하게 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또 아동의 행동을 비난하지 말아야 함

#### ■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

피해를 당한 아동이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함  
아동이 힘들었던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줌

#### ■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부모나 교사의 성 인지나 가치관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함

#### ■ 너무 자세하게 캐묻지 않기

아동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말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그냥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음.  
아동의 혼란스러운 기분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줌

#### ■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정액이나 혈흔 등이 묻은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증거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기억해주세요.

- ❶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❷ 아동에게 피해사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 ❸ 피해사실에 대해 아동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확인하지 마세요.
- ❹ 아동이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못하게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 주세요.
- ❺ 가해자, 피해공간 등 피해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하세요.
- ❻ 사건 처리과정에 아동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 ❼ 아동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2) 성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구분	소개	연락처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	<p><b>해바라기 아동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중심의 종합 서비스와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돋는다.</li> </ul>	<a href="http://www.child1375.or.kr">http://www.child1375.or.kr</a> 1899-307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p><b>아동권리보장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한다.</li> </ul>	<a href="http://www.korea1391.go.kr">http://www.korea1391.go.kr</a> 아동지킴이콜: 112
여성긴급전화 1366	<p><b>여성긴급전화 136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 지원센터로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 보호 · 상담이 필요한 여성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 신고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한다.</li> </ul>	<a href="https://www.women1366.kr">https://www.women1366.kr</a> 전국 어디서나 1366 / 1년365일 24시간 HOT-LINE 운영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사)한국성폭력상담소(2018).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 Ⅱ. 아동 실종 예방

### 01 실종에 대한 이해

#### 1) 실종아동의 정의 및 유형

- 실종아동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함. 아동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의미함

〈표 2-3〉 실종 아동의 유형

미아	유괴	가출	사고	유기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길을 잃는 경우	금전, 성적 만족, 양육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사고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버린 경우

#### 2) 실종·유괴 예방교육 관련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관련 용어] 보호자,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 사전등록, 위치추적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도모를 위해 2005년 제정되었음.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위해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음

### 3) 실종아동 현황

- 2019년 11월 기준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은 19,949건, 미발견 아동은 87건으로, 미발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표 2-4〉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단위: 건)

구분	18세 미만 아동	
	접수*	미발견**
총 누적	-	689
2015년	19,428	1
2016년	19,870	4
2017년	19,956	5
2018년	21,980	10
2019년 11월	19,949	87

(\*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19. 11월말)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의 2018·2019 사업보고서

〈표 2-5〉 실종아동 기간별 현황(장기실종아동)

('19.10.기준, 경찰청, 단위: 건)

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0년	유기
684	99	18	15	58	494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

### 4) 실종으로 인한 문제

〈표 2-6〉 실종으로 인한 문제

대상	문제점 및 어려움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와의 분리경험은 안전한 양육기회 박탈로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위협을 받음</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짐</li> <li>일에 대한 의욕상실과 찾기 활동 매진으로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실직과 이직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문제가 야기됨</li> <li>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부부 간의 이견과 스트레스로 부부갈등 심화, 가족해체 유발</li> <li>부모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실종아동의 형제·자매의 경우 신체·정서적으로 방임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불안과 불신 분위기를 조성함</li> <li>실종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정이 해체되고 별거, 이혼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남</li> </ul>

## 02 아동 실종 · 유괴 예방교육

### 1) 실종 · 유괴 예방교육 내용

■ 실종 · 유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므로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황 판단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한 역할극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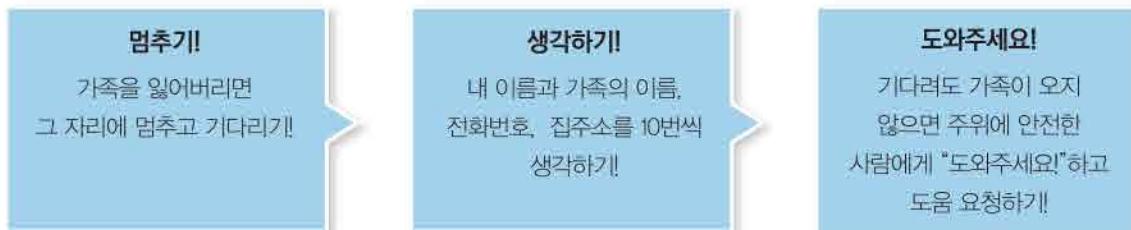
〈표 2-7〉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종 · 유괴의 예방 · 방지교육'

실시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을 잊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li> <li>유괴범에 대한 개념</li> <li>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시청각 교육</li> <li>사례 분석</li> </ul>

#### (1) 미아 예방교육

■ 미아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고 길을 잊고 당황하면 평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아예방 3단계 구호를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며 안전요원, 아이와 함께 있는 성인, 경찰, 안전지킴이집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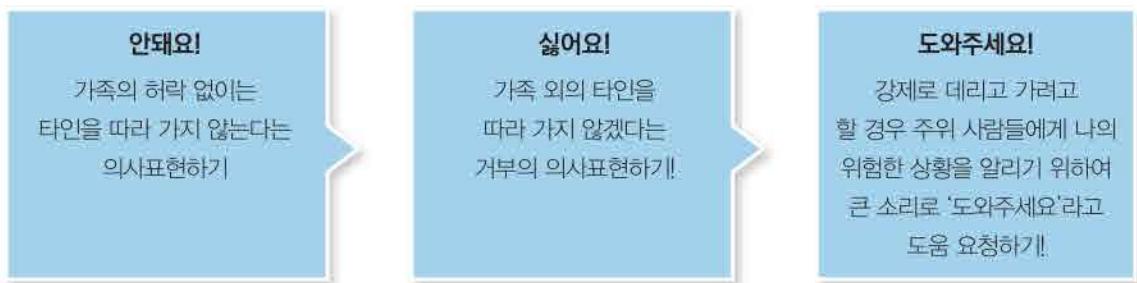
##### [미아 예방 3단계 구호]



## (2) 유괴 예방교육

- 영유아는 무서운 인상의 모습을 한 사람을 유괴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유괴범은 오히려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영유아와 안면이 있거나 부모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부모(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아는 사람이어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함
- 유괴범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직접 재연하여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며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분명하게 저항하도록 연습하되 소리치는 것이 생명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를 분별하도록 교육함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표 2-8〉 아동·유괴 범죄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및 지도방법	대처방법
호기심유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호기심을 유발하여 유인함 예) 설문조사를 해주면 선물을 준다고 유인함. 얼굴이 예쁘니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연예인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유인함</li> </ul>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요.”라고 말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계심이 풀어지는 때를 노리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건은 절대 받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li> </ul>	
지인사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 이웃으로 가장하여 친근하게 접근함 예)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함께 이동할 것을 권유함</li> <li>• 이름을 부르며 친분이 있음을 표현하며 유인함</li> </ul>	“부모님께 먼저 여쭤볼게요.”라고 말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있어도 반드시 부모(보호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지도해야 함</li> </ul>	
동정심유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을 요청하며 아동의 동정심에 호소함 예) 팔을 다쳤다고 도와달라고 유인함</li> <li>• 걸어가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유인함</li> </ul>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동정심을 이용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보상심리를 이용하는 유인수법임 정상적인 어른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함</li> <li>• 직접 돋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한 행동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함</li> </ul>	
물리적 강제동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갑 예)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가거나 차에 태움</li> </ul>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하고 큰소리로 외쳐요. (소리를 지르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던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공포심을 이용한 수법으로 되도록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며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함</li> </ul>	

### 유괴를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 유괴범을 자극하거나 불안함을 조성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교육

- 격리된 공간에 유괴범과 단둘이 있을 경우, 울음을 참고 이야기를 잘 들을 것
- 고개를 숙이고, 유괴범의 얼굴을 가급적 보지 말 것
- 음식을 주면 먹기 싫어도 꼭 먹을 것
-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03 실종·유괴 예방 수칙

### 1) 부모(보호자)가 알아야 할 실종·유괴예방 수칙

#### ①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 아동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기
- 사전등록은 안전Dream홈페이지(안전Dream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함을 숙지하기

####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

#### ②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 잠시 외출한다고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지 않으며, 특히 아동이 잡든 틈에 외출금지
- ※ 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 혼자 두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 ③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 백화점, 마트, 시장, 쇼핑몰, 영화관, 공원 등 외출 시, 아동을 잠시라도 혼자두지 않기
- 화장실을 혼자 가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

#### ④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 아동이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 착용하기
- 이름표 등을 착용하고,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은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놓기

#### ⑤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베릇 등 아동의 인적사항 적어놓기

#### ⑥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 아동의 하루 일과와 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기

#### ⑦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 정기적으로 아동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사전등록된 경우 아동의 사진을 수시로 변경)

〈표 2-9〉 장소, 상황별 실종·유괴 예방지침 <sup>9</sup>

놀이터, 공원에서의 실종·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가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li> <li>- 혼자서 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놀기</li> <li>- 보호자가 항상 지켜볼 수 있는 밝고 환한 곳에서 놀기</li> <li>- 누군가 다가와 유인하는 경우에는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기</li> <li>-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기</li> </ul>
집에 혼자 있을 때의 실종·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기</li> <li>-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주의를 둘러보고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뒤 문 열기</li> <li>- 집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하고 큰소리로 인사하면서 들어가기</li> <li>- 혼자 있을 때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되도록 전화 받지 않기</li> </ul>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종·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보는 습관 기르기</li> <li>-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숫자 버튼을 누르는 곳 앞에 벽을 등지고 서기</li> <li>-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면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리기</li> <li>-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바로 비상 버튼을 눌러 도움 요청하기</li> </ul>

## 0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 1) 실종 발생 시 대처방법

#### ① 가까운 곳을 찾아보기

- 집 근처에서 실종 시 갈만한 곳이나 자주 다니는 경로를 따라 살펴보고, 공공장소에서 실종 시에는 안내데스크나 미아보호소에 안내 방송 요청

#### ② 주변관계망 통해 찾기

- 자주 이용하던 매장 등의 교류 통해 실종 발생 시 협조 요청하기

#### ③ 즉시 신고하기

- 실종 신고 전화번호: 112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182)
- 문자상담 : #0182로 내용 및 사진 입력 후 전송
- 방문신고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

<sup>9</sup>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2018). 실종예방 그림놀이

##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사항<sup>10</sup>

- 아동의 이름
- 아동의 나이(생년월일)
-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 잃어버리게 된 자세한 경위
- 실종 발생 당시 아동이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신체특징(얼굴모양, 머리모양, 흉터나 점 등의 여부, 안경 착용 여부, 키, 몸무게 등)
- 아동의 최근 사진(가능한 다른 모습이 담긴 최근 사진 여러 장)
- 부모 이름 및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주소

## 2)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sup>11</sup>

- 아동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함
-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함
- 아동이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동의 부모를 기다림. 아동이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떨어진 경우 아동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음
- 아동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래줌. 아동이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됨
- 아동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봄
-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하여 실종아동 찾기 안내방송을 요청해야 함
- 아동을 실종아동보호센터, 경찰서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동을 발견한 사람의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함

<sup>10</sup>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http://www.missingchild.or.kr))

<sup>11</sup> 출처: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 05

## 실종예방 관련 정보

## 1) 실종예방 방법 및 관련제도

아동안전 지킴이집	학교주변 · 통학로 ·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	 아동안전지킴이 보호점	 안전지킴이집 비부록상호자료
아동안전수호천사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아동보호활동을 하는 것. 현재 <u>야쿠르트</u> 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운전자회, 학원차량기사 등이 활동 중		
코드아담 (Code Adam)	<p>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치단계: 실종 신고 접수 &gt; 경보 발령 &gt; 출입구 통제나 감시 &gt; 실종자 수색 &gt; 수색 10분 경과 시 경찰 신고(미발견 시)</li> <li>■ 대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m<sup>2</sup>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li> <li>5,000m<sup>2</sup>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시철도역사나 철도역사, 관람석</li> <li>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경마장 등</li> </ul> </li> </ul>		
앰버경보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인상착의 등 신상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여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		
아이CU	'CU에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길을 잃은 아이(치매환자, 지적 · 자폐 · 정신장애인 포함)를 CU 매장에서 일시 보호하다가 경찰 및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BGF의 사회공헌 캠페인. CU 매장과 경찰청 신고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 구축		

## 2) 관련 사이트

<p style="text-align: center;"><b>안전Dream</b>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a href="https://www.safe182.go.kr/index.do">https://www.safe182.go.kr/index.do</a></p> 	<p style="text-align: center;"><b>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b> <a href="https://www.missingchild.or.kr/">https://www.missingchild.or.kr/</a></p> 
--	---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2019). 2018·2019 사업보고서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2018). 실종예방그림놀이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https://www.missingchild.or.kr))
- 안전드림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https://www.safe182.go.kr))

##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 기획 · 총괄

성명	소속	직위
우현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선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팀장
윤상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보육전문요원

### 감수

분야	감수
아동학대 예방	강동훈 과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 예방	정인자 공동대표(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실종 예방	선미현 강사(실종아동전문기관)

### 2019년 집필

분야	집필
아동학대 예방	이원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김흔숙 원장(인천성모병원어린이집)
성폭력 예방	정인자 공동대표(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실종 예방	이기순 강사(실종아동전문기관)

**디자인 · 인쇄** (주)현대아트컴

**발행처** 어린이안전공제회

**발행일** 제1판 2020년 3월

**ISBN** 979-11-85610-39-9

※ 이 책에 실린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있으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영유아는 + 안전하게! 보육교직원은 행복하게!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수행을 통한  
영유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진행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대상 국외연수 실시



공모전 및 뉴스레터 운영으로  
영유아 안전 환경 조성



소방, 교통 등 맞춤형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보육현장 사례중심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영유아,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 정기가입안내

매년 2월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공제상품 정기 가입기간」입니다.

공제상품 가입을 통해 새 학기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상품 총 12종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집기/화재배상특약), 풍수해특약, 보증